

# 한국도핑방지규정

Korea Anti-Doping Rules

2021





## 전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도핑방지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2003년 3월 5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회 세계스포츠도핑 회의(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에서 채택되고 2004년 10월 1일 발효된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과 2007년 4월 1일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에 따라 국내의 도핑방지를 위하여 2007년 6월 22일 한국도핑방지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 등 세계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에서 정한 국가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의 실행모델(WADA NADO Model Rules)을 근거로 한다.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스포츠에서 지켜야 하는 경기 규칙과 같은 것으로서 스포츠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정과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형사 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이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되, 민·형사상 소송 및 그 절차에 적용되는 국내법상 의무나 법적 기준에는 구애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법률을 검토할 때, 법원, 중재 기구 및 그 밖의 조정기구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이행에 따른 이 규정의 특수성과 이 규정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도핑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관리 업무나 도핑방지 교육에 관한 권한 또는 사무를 외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나 그 기관이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수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을 진다.

##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의 기본 원리**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스포츠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즉, 선수의 타고난 재능을 순수하고 완벽하게 구현하여 인간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핑방지 프로그램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수가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간의 우수성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핑방지 프로그램은 규칙의 준수, 경쟁자에 대한 존중,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성 등 클린 스포츠를 통하여 스포츠의 완전 무결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심신의 찬양이며 올림픽 정신의 핵심이고, 스포츠를 통해 발견하는 다음의 가치를 수반한다.

- 건강

- 윤리, 페어플레이 및 정직
-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된 선수의 권리
- 우수한 경기력
- 인격과 교육
- 재미와 즐거움
- 협동 정신
- 헌신과 책임
- 규정과 법령의 준수
- 자신과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는 자세
- 용기
-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

스포츠정신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 적용 범위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지원요원, 기타 관계자, 체육단체와 이 규정을 수용한 그 밖의 모든 단체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제1장 제5조의 내용과 같다.

# CONTENTS

## 목차

### 전문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의 기본 원리 .....	ii
적용 범위 .....	iii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1
제2조(목적) .....	1
제3조(용어의 정의) .....	1
제4조(국가도핑방지기구의 의무) .....	1
제5조(적용 범위) .....	1
제6조(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 의무) .....	3
제7조(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4
제8조(경기단체의 역할과 책임) .....	4
제9조(선수의 역할과 책임) .....	5
제10조(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	6
제11조(기타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	7

### 제2장 도핑방지규정위반 및 도핑의 증명

제12조(도핑의 정의) .....	7
제13조(도핑방지규정위반) .....	7
제14조(증명의 책임 및 정도) .....	12
제15조(사실의 증명·추정 방법과 증명의 책임) .....	12
제16조(불출석에 대한 불리한 추론) .....	14

### 제3장 금지목록

제17조(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적용) .....	15
제18조(금지목록의 결정) .....	15
제19조(금지약물과 금지방법) .....	16

### 제4장 치료목적사용면책

제20조(치료목적사용면책) .....	16
제21조(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7

제22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	17
제23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후신청) .....	18
제24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결정) .....	19
제25조(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의 효력) .....	19
제26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 만료, 철회 또는 변복) .....	21
제27조(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한 검토) .....	22

## **제5장 검사 및 조사**

제28조(검사와 조사의 목적) .....	23
제29조(검사 권한) .....	23
제30조(경기대회 검사) .....	24
제31조(검사 요건) .....	25
제32조(검사대상명부) .....	25
제33조(검사대상후보명부) .....	27
제34조(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	29
제35조(조사 및 정보수집) .....	29
제36조(독립관찰프로그램) .....	30

## **제6장 시료 분석**

제37조(인증된 분석기관의 사용·이용) .....	30
제38조(시료와 데이터 분석의 목적) .....	30
제39조(시료와 데이터 연구) .....	31
제40조(시료 분석과 보고의 기준) .....	31
제41조(결과관리 이전 또는 과정 중 시료의 추가 분석) .....	31
제42조(음성 보고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제기되지 않은 시료의 추가 분석) .....	32
제43조(A 시료 또는 B 시료의 분리) .....	32
제44조(세계도핑방지기구의 시료 및 데이터 보유권리) .....	32

## **제7장 결과관리**

제45조(결과관리 수행의 책임) .....	33
제46조(결과관리의 범위) .....	34
제47조(결과관리 결정의 통지) .....	35

# CONTENTS

제48조(분석 결과의 접수 등) .....	35
제49조(잠재적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검토와 통지) .....	35
제50조(혐의 통지 전 도핑방지규정위반 이력의 사전조회) .....	36
제51조(B 시료 분석) .....	36
제52조(임시자격정지) .....	37
제53조(임시청문의 개최) .....	39
제54조(청문권리의 포기) .....	40
제55조(청문없는 결정) .....	40
제56조(은퇴선수에 대한 결과관리) .....	41
<b>제8장 제재위원회</b>	
제57조(제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1
제58조(제재위원회의 권한) .....	42
제59조(공정한 청문을 위한 원칙) .....	42
제60조(청문 절차) .....	43
제61조(제재위원회 결정의 통지) .....	44
제62조(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의 단독 청문) .....	45
<b>제9장 개인에 대한 제재</b>	
제63조(개인 경기결과의 자동 실효) .....	45
제64조(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대회 전체 경기결과의 실효) .....	45
제65조(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보유에 대한 자격정지) .....	46
제66조(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	47
제67조(자격정지기간의 연장) .....	49
제68조(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	49
제69조(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	50
제70조(이 규정의 위반을 적발 또는 증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유예 등) .....	51
제71조(자인이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유일한 증거인 때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	53
제72조(제재의 감경에 대한 복수 근거의 적용) .....	53

제73조(결과관리의 합의) .....	54
제74조(재위반) .....	55
제75조(잠재적인 재위반에 관한 특별규정) .....	56
제76조(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후 참가하는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결과의 실효) .....	57
제77조(상금의 몰수) .....	57
제78조(자격정지기간의 기산) .....	57
제79조(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 .....	59
제80조(훈련 복귀) .....	60
제81조(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 위반) .....	60
제82조(자격정지기간 중 재정지원의 중단) .....	60
제83조(제재의 공개) .....	61
<b>제10장 단체종목 및 경기단체에 대한 제재</b>	
제84조(단체종목에 대한 제재) .....	61
제85조(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	61
<b>제11장 항소</b>	
제86조(항소의 관할) .....	62
제87조(국제수준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 .....	62
제88조(국가수준 선수 등의 항소) .....	62
제89조(국가항소기구의 설치 및 운영) .....	63
제90조(항소의 대상) .....	63
제91조(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과 관련한 항소) .....	64
제92조(임시자격정지 부과에 대한 항소) .....	65
제93조(항소기간) .....	65
제94조(항소 절차) .....	66
제95조(국가항소기구 결정의 통지) .....	67
제96조(항소 전 결정의 효력) .....	67
제97조(국가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불복) .....	67
제98조(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 .....	67

# CONTENTS

## 제12장 기밀유지 및 보고

제99조(통지의 방법) .....	68
제100조(비밀준수 의무) .....	69
제101조(도핑방지규정위반,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결정 위반에 관한 통지와 자료 요청) .....	70
제102조(일반공개) .....	70
제103조(통계 보고) .....	72
제104조(도핑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준수 모니터링) .....	72
제105조(개인정보보호) .....	73

## 제13장 결정의 이행

제106조(가맹 도핑방지기구 결정의 효력 및 범위) .....	74
제107조(도핑방지기구에서 내린 기타 결정의 이행) .....	75
제108조(비가맹기구 결정의 이행) .....	75

## 제14장 교육

제109조(교육의 시행) .....	76
---------------------	----

## 제15장 보칙

제110조(시효) .....	77
제111조(규정의 개폐) .....	77
제112조(해석) .....	77
제113조(일부무효) .....	78
제114조(적용법률) .....	78

## 부칙

제1조(시행일) .....	78
제2조(경과조치) .....	78

## 별표 1 용어의 정의

## 별표 2 주요 약어 목록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 2007.06.22.  
전부개정 2008.12.24.  
개정 2010.12.28.  
개정 2012.01.10.  
전부개정 2014.12.31.  
전부개정 2020.12.31.  
개정 2022.03.08.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규정(Korea Anti-Doping Rules, 약칭: KADR)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가 그 목적사업의 추진과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The Code)이 정한 도핑방지활동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국가도핑방지기구의 의무)** 대한민국의 국가도핑방지기구인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의 가맹기구로서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1. 단체



- 가. 도핑방지위원회
  - 나.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지회
  - 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단체
  -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이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를 “경기단체”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
2. 개인
- 가. 도핑관리와 관련된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제3자와 그 직원을 포함한 관계자
  - 나. 도핑관리와 관련된 경기단체의 임직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제3자 및 그 직원을 포함한 관계자
  - 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보호대상자도 포함한다)
    - 1) 경기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의 등록선수와 선수지원요원
    - 2) 개최장소를 불문하고 경기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에서 주관,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대회나 경기, 그 밖의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 3) 도핑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승인, 자격 부여 또는 그 밖에 계약상 합의 등에 따라 경기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선수, 선수지원요원과 기타 관계자
    - 4)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은퇴 후 복귀 예정인 선수
    - 5) 자격정지 중인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
    - 6) 레크리에이션 선수<sup>1</sup>
  - 라. 대한민국 국민, 거주 중인 선수를 포함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sup>1</sup>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6] 주해]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 이전 5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를 말한다. ①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경기연맹이 정의한 국제수준의 선수 ②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정의한 국가수준의 선수 ③ 연령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는 국제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또는 다른 나라를 대표한 적이 있는 선수 ④ 국제경기연맹,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기타 국가도핑방지기구에서 관리하는 검사대상명부 또는 소재지정보 제출 대상자 명부 등에 포함된 적이 있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개인과 대회 참가나 훈련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모든 선수

② 이 규정은 제1항의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국가수준의 선수로 분류되는 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국제경기연맹이 국제수준의 선수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국가수준이 아닌 국제수준의 선수로 간주된다.

1. 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KADA RTP)에 포함된 선수
2. 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후보명부(KADA TP)에 포함된 선수
3. 동·하계 올림픽/패럴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하기 위해 선발·확정한 국가대표 선수
4. 동·하계 올림픽/패럴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
5. 세계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기 위해 선발·확정한 국가대표 선수<sup>2</sup>

**제6조(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 의무)** 제5조의 단체와 개인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에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이 규정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결과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가 도핑방지위원회에 있음을 인정하며, 제8장과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재재위원회와 항소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sup>3</sup>

<sup>2</sup> [제5조 제2항 제5호 주해] 축구의 월드컵 등과 같이 해당 종목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없는 경우에는 연간 검사배분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별도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를 정하여 시행한다.

<sup>3</sup> [제6조 주해]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아닌 개인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러한 개인은 시료채취 또는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보유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5조(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제2.7조(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제2.8조(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제2.9조(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제2.10조(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및 제2.11조(제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위반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되며,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1.3조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 및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소속 직원에게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의무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임직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제3자 및 그 직원 등을 고용하거



**제7조(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 규약 제20.5조와 제24.1.2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의 준수 상황을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핑관리의 각 절차에 관련된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제3자는 관련 법률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0.5.10조에 따라 직접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자’로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 직원은 관련 법률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0.5.11조에 따라 허가된 도핑방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도핑관리와 관련하여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세계도핑방지 규약에 따라 최근 6년 이내에 직접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경기단체의 역할과 책임)** ① 경기단체와 그 산하단체는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기단체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준수 의무에 따라 자체 정관 또는 규약 등에 이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 산하의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기단체는 선수 등록 시에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경기단체는 선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여 국가 도핑방지정책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취지와 조건을 수용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관련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서 규율하지 않는 도핑방지

---

나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그들이 이 규정을 따르고 준수하며, 도핑방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관련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sup>4</sup>

- ⑤ 경기단체와 그 산하단체는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포함하여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인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단체와 그 산하단체가 승인, 주관하는 경기 또는 활동을 준비하거나 참가하는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이 이 규정을 따르고,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도핑방지기구의 결과관리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나 활동에 참가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경기단체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5.2.1조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소관 종목에서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것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와 협력하여 선수, 선수지원요원, 기타 관계자에 대한 도핑방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⑧ 경기단체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한 제보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 및 각 국제경기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 도핑방지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⑨ 경기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선수 지원요원이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해당 경기단체의 권한 하에 있는 선수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⑩ 경기단체는 권한 하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검사관 또는 시료채취요원 등 도핑관리 관계자에게 행하는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선수의 역할과 책임) 선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up>4</sup> [제8조 제4항 주해] 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가 정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재정 또는 그 밖의 지원을 받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를 인정하고 이 규정을 수용·이행하도록 정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1.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언제나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sup>5</sup>
3. 도핑방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지도자 또는 의료진에게 선수 자신에게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알리고, 그들의 지원이나 의료처치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할 책임을 진다.
5. 과거 10년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규약의 비가맹기구로부터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이를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에 알려야 한다.
6.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7. 도핑방지위원회, 경기단체 또는 선수에 대한 권한을 가진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요청 시 자신을 지원하는 선수지원요원의 신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의 검사 프로그램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선수가 도핑방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과거 10년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규약의 비가맹기구로부터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이를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에 알려야 한다.

<sup>5</sup> [제9조 제2호 주해] 선수의 인권 및 사생활을 존중하나 적법한 도핑방지 업무 절차에 따라 때로는 밤늦게 또는 이른 아침에 시료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수는 아침에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시간대에 저용량의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기타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기타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과거 10년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규약의 비가맹기구로부터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이를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에 알려야 한다.
3.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 제2장 도핑방지규정위반 및 도핑의 증명

**제12조(도핑의 정의)** 도핑이란 이 규정의 제1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도핑방지규정위반)<sup>6</su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된다.

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의무이다.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

<sup>6</sup> [제13조 주해] 본조의 목적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는 상황과 행위를 기술하는 데에 있다. 도핑사건의 청문은 이 규정을 하나 이상 위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진행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금지목록에 수록된 약물 및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자가 검출되면 선수 본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선수 측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 또는 인지 후 사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제1호의 도핑방지 규정위반은 성립한다.<sup>7</sup>

나. 제1호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한 증명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한 것으로 충분하다.<sup>8</sup>

- 1) A 시료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고 선수가 B 시료의 분석을 포기하여 B 시료가 분석되지 않은 경우
- 2) B 시료가 분석되고 그 결과 A 시료에서 발견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 3) A 시료 또는 B 시료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뉜 시료의 두 번째 분석 결과가 해당 시료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와 일치하거나, 선수가 나뉜 시료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포기하는 경우

다. 금지목록 또는 기술문서에서 별도로 금지약물 결정기준의 한계 수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출된 양과 관계없이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된다.

라. 제1호 규정에 대한 예외로 금지목록, 국제표준 또는 기술문서에서 특정한 금지약물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sup>9</sup>

<sup>7</sup> [제13조 제1호 가록 주해] 제1호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은 선수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이 원칙은 많은 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에서 ‘엄격한 책임’으로 인용되었다. 선수의 과실은 제9장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이 원칙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sup>8</sup> [제13조 제1호 나록 주해] 결과판리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B 시료의 분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핑방지기구의 재량으로 B 시료 분석을 결정할 수 있다.

<sup>9</sup> [제13조 제2호 주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되어 왔다. 제15조 주해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13조 제1호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는 달리, 사용 또는 사용 시도는 선수의 자인, 증인의 증언, 서면 증거, 선수생체수첩의 일환으로 채취된 데이터를 포함한 장기간의 프로파일링에서 도출된 결과, 제13조 제1호의 금지약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 기타 분석 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핑방지기구가 다른 시료에 의한 확인이 없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A 시료의 분석(B 시료 분석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또는 B 시료의 단독

- 가.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않게 하고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선수 개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성립을 위하여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 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의 성공 여부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사용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된다.<sup>10</sup>

### 3.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선수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sup>11</sup>

### 4.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12개월 이내에 검사불이행과 제출불이행 횟수를 모두 합쳐 3번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을 기록하는 경우

### 5.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6.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가. 선수가 경기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거나 경기기간 외에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다만,

---

분석에서 얻은 신뢰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근거로도 금지약물의 사용이 증명될 수 있다.

10 [제13조 제2호 나목 주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시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수 측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정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의가 요구되는 것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관한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에 대하여 수립된 엄격한 책임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지약물의 사용은 해당 약물이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이고 선수의 사용 시점이 경기기간 외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경기기간 중 채취된 시료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의 사용 시기를 불문하고 제13조 제1호의 위반에 해당한다.

11 [제13조 제3호 주해] 예를 들어, 선수가 통지나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핑검사관을 피한 사실이 증명되면 '시료채취의 회피'에 해당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된다. '시료채취의 실패'로 인한 위반은 선수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행위 모두를 근거로 할 수 있으나, 시료채취의 '회피' 또는 '거부'로 인한 위반은 선수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만을 근거로 성립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보유가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 목적사용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선수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거나 경기기간 외에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선수, 경기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다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보유가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따른 것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선수지원요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up>12</sup>

7.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8.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9.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협조, 조장, 원조, 교사, 음모, 은폐, 그 외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의도적인 공모 또는 공모의 시도, 기타 관계자에 의한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제79조 위반의 시도<sup>13</sup>

10.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가. 도핑방지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직무 또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행위

12 [제13조 제6호 주해]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인슐린을 사는 행위와 같이 정당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구나 친척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구매하거나 보유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선수 또는 팀닥터가 급성 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보유하거나(예: 애피네프린 자가 주사기), 선수가 치료 목적사용면책을 신청 후 결정이 나기 전에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3 [제13조 제9호 주해] 공모 또는 공모 시도에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 1) 도핑방지기구의 권한 하에 있으면서 자격정지 중인 자
- 2) 도핑방지기구의 권한 하에 있지 않고,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른 결과관리 절차에 따라 자격정지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부합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도핑방지규정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로 형사 절차, 징계 절차 또는 직무상 제재 절차에서 유죄판결 또는 그 밖에 결정을 받은 자. 이러한 자의 자격정지 상태는 형사처분, 징계처분, 직무처분 결정일로부터 6년 또는 그 형사처분, 징계처분, 직무처분의 준속기간 중에서 더 긴 기간만큼 유효하다.
- 3) 제10호 가목의 1) 또는 2)에서 규정한 개인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자

나. 도핑방지기구가 제10호의 위반을 증명하려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선수지원요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호 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선수지원요원과의 연루가 직무 또는 스포츠와 관련된 역할이 아니거나 그러한 연루를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있다. 제10호 가목의 1)부터 3)에서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지원요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도핑방지기구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14</sup>

## 11. 제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또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비준수 혐의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 도핑방지기구, 사법기관, 규제 또는 징계기구, 청

<sup>14</sup> [제13조 제10호 주해]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정지 중이거나 도핑파 관련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직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 트레이너, 의사, 그 밖의 선수지원요원과 함께 활동하지 않아야 하며, 자격정지기간 중에 지도자 또는 선수지원요원으로 역할 하는 다른 선수와 연루되는 것도 금지된다. 금지된 연루의 예로는 훈련이나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 조언을 받는 행위, 치료, 처치, 또는 처방받는 행위,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금지된 연루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립된다. 제13조 제10호에 의하면 도핑방지기구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선수지원요원의 자격정지 상태에 대하여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해당 선수지원요원의 자격정지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문기구 및 세계도핑방지기구나 도핑방지기구를 대신하여 조사하는 자에게 선의로 제보하는 것을 제지할 목적으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위협을 시도하는 행위

- 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또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비준수 혐의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 도핑방지기구, 사법기관, 규제 또는 징계기구, 청문기구 및 세계도핑방지기구나 도핑방지기구를 대신하여 조사하는 자에게 선의로 제보한 자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sup>15</sup>
- 다. 본조의 목적상 보복, 위협은 그 행위가 선의<sup>16</sup>의 목적이 아니라거나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취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제14조(증명의 책임 및 정도)** ① 도핑방지규정위반 발생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도핑방지위원회에 있다. 증명 기준은 제기된 혐의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였음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입증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이 증명의 기준은 단순한 개연성보다는 높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보다는 낮다.

② 추정 사실에 대한 반증이나 확립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반박 책임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이 증명의 기준은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을 제외하고는 증거 간의 우월성, 즉 개연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sup>17</sup>

**제15조(사실의 증명·추정 방법과 증명의 책임)** ①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사실은 자인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sup>18</sup>

<sup>15</sup> [제13조 제11호 나목 및 다목 주해] 본목의 목적은 선의로 제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허위 제보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보복에는 제보자, 그 가족이나 관련된 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위나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도핑방지기구가 제보자에 대하여 선의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목의 목적상 제보자가 제보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sup>16</sup> [제13조 제11호 다목 주해] 오직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제보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제보하는 행위는 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sup>17</sup> [제14조 주해] 도핑방지위원회에 요구되는 증명 기준은 대부분 국가에서 직업상의 위법행위를 동반한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하다.

<sup>18</sup> [제15조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자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 신뢰할 수 있는 서면 증거, 제13조 제2호의 주해에 기술된 A 시료 또는 B 시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자료,

- ② 관련 과학계에서 논의되었거나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승인한 분석 방법과 결정기준의 한계 수치는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와 같은 추정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학적 타당성의 추정을 반박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의제기의 사실과 그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기구, 항소기구,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그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그러한 통지와 이의제기 관련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절차에 당사자로서 개입하거나 법정 조언자로 참석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요청하면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의제기에 대한 평가 시 이를 지원할 적합한 과학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sup>19</sup>
- ③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과 그 외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승인한 분석 기관은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따라 시료 분석과 관리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석기관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증명하여 위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위 추정을 반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sup>20</sup>
- ④ 세계도핑방지규약 또는 이 규정에 명시된 다른 국제표준이나 도핑방지에

---

선수생체수첩의 데이터와 같은 일련의 선수 혈액 또는 소변 시료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결론 등에 근거하여 제13조 제2호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증명할 수 있다.

<sup>19</sup> [제15조 제2항 주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일부 금지약물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추정치가 일정 농도, 즉 최소보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시료를 비정상분석결과로 보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최소보고기준의 설정 또는 최소보고기준의 대상이 되는 금지약물의 결정에 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시료 내 금지약물에 대한 분석기관의 추정 농도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시료 내 금지약물의 정확한 농도가 최소보고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해 반박할 수는 없다.

<sup>20</sup> [제15조 제3항 주해] 「분석기관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일으켰을 수 있음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있으며, 개연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증명할 경우, 비정상분석결과와 이탈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기준은 “합리적으로 해당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다소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청문 위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관한 일반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은 분석 결과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의 다른 증거를 무효화 하지는 않으며,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반박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sup>21</sup>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 국제표준 조항으로부터의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나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근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소재지정보 불이행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1. 비정상분석결과에 근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시료채취 또는 시료 취급과 관련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
2.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정상수첩결과와 관련된 「결과관리 국제표준」 또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
3. 비정상분석결과에 근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B 시료 개봉 관련 선수에 대한 통지 요건과 관련된 「결과관리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sup>22</sup>
4.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근거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의 통지와 관련된 「결과관리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

⑤ 판단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직무 관련상 징계기구 등에서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으로 증명된 사실은 그 사실과 관련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다만,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 결정이 자연법칙에 반한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불출석에 대한 불리한 추론) 청문 기구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혐의

<sup>21</sup> [제15조 제4항 주해] 시료의 채취 또는 관리, 비정상수첩결과, 소재지정보 불이행 또는 B 시료 개봉과 관련한 선수 통지와 무관한 국제표준 또는 그 밖의 규정(예: 「교육 국제표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준수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도핑방지규정위반 절차에서 방어의 근거가 되거나 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핑방지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0.7.7조에서 인용한 문서(선수도핑방지권리강령)를 위반했다고 해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sup>22</sup> [제15조 제4항 제3호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위원회는 B 시료의 개봉과 분석 시 독립적인 제3자가 입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보임으로써 국제표준의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 기구 또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청문 개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석해서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거부에 근거하여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 제3장 금지목록

**제17조(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1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공표하고 개정하는 최신 금지목록(The Prohibited List)을 포함한다.

② 선수와 기타 관계자는 제1항의 최신 금지목록 및 개정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금지목록과 개정안은 금지목록 또는 그 개정안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공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되며, 그 즉시 모든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게 적용된다.<sup>23</sup>

**제18조(금지목록의 결정)** ① 금지목록에 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1. 금지목록에 포함될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에 관한 결정
2.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의 분류
3. 상시금지 또는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의 분류
4. 특정약물, 특정방법 또는 남용약물의 분류

②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1항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해당 약물이나 방

<sup>23</sup> [제17조 주해]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 홈페이지 <https://www.wada-am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개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새로운 금지목록이 공표된다.



법이 은폐제가 아니라거나 경기력 향상, 건강상 유해 또는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9조(금지약물과 금지방법)24** ① 금지목록은 향후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 또는 은폐 가능성으로 인해 도핑으로 상시 금지되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과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으로 구분된다.
- ②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특정 종목에서 금지목록을 확대할 수 있다.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은 일반적인 분류 방식으로 금지목록에 포함될 수도 있고, 특정 성분명이나 방법을 개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금지목록에 포함될 수도 있다.
- ③ 제9장의 적용과 관련하여, 금지약물은 금지목록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약물로 본다. 금지방법은 금지목록에 특정방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sup>25</sup>
- ④ 제9장의 적용과 관련하여, 남용약물(Substances of Abuse)은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자주 남용되기 때문에 금지목록에서 별도로 “남용약물”로 명시한 금지약물을 말한다.

## 제4장 치료목적사용면책

- 제20조(치료목적사용면책)** ① 이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rapeutic Use Exemption)」을 포함한다.

<sup>24</sup> [제19조 주해]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사용했을 경우, 경기기간 중 시료채취에서 해당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비정상분석결과가 보고되지 않는다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sup>25</sup> [제19조 제3항 주해] 본항에 명시된 특정약물과 특정방법이 다른 도핑 약물이나 방법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수가 특정약물과 특정방법은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큰 약물이나 방법이다.

②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나 사용 시도, 보유, 투여나 투여 시도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부여된 치료목적사용면책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 규정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1조(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임상, 스포츠 및 스포츠 의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위원은 선임 시 이해상충 및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알게 된 선수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을 지정한다.

④ 각 위원은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검토하기 전에 신청한 선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명된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검토할 수 없거나 검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대체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해당 건에 관한 심사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① 국제수준의 선수는 자신의 국제경기



연맹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제수준의 선수가 아닌 모든 선수 또는 선수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선수지원요원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핑방지위원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수준의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4.1조 또는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이전에 도핑방지위원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④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은 온라인 프로그램, 팩스, 이메일 등 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방법에 따른다.

- ⑤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만료일 이전 또는 다시 필요할 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sup>26</sup>

**제23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후신청)** ①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하여 사후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해 사후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비정상분석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

<sup>26</sup> [제22조 주해]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5.1조에 따라 검사배분계획상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종목의 국가수준 선수에 대한 사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거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가 추후 검사를 받게 되면,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후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선수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위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증언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하는 행위, 치료목적사용면책 절차 중 기타 사기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고의적 방해행위나 방해 시도는 제13조 제5호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시도에 따른 위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또는 갱신)을 위한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승인 전에 이루어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보유, 투여는 전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다.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결정)** ①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가 접수된 후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이 대회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해당 경기대회의 시작 전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최종결정이며, 제 91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결정을 선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그 밖의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의 효력)**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모든 국가의 국가수준(National-level)에서 유효하며, 다른 국가도핑방지기구의 공식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선수가 국제수준의 선수가 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해당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로 구분된다.

- ② 선수가 해당 약물 또는 방법에 대해 이미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수가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 대회 주관단체가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선수는 국제경기연맹이나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에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sup>27</sup>

<sup>27</sup> [제25조 제2항 제1호 주해]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수와 도핑방지위원회에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 인정의 거부를 통지한 경우,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지 수령 후 21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해당 사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제2호의 통지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국제수준의 경기를 제외하고 국내경기대회와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4.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제2호의 통지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자체 승인한 기존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국내경기대회와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국제수준의 선수 자격이 아니고 국제수준의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국내경기대회와 경기기간 외 검사에 있어서는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국제수준의 경기에서는 효력을 상실한다.<sup>28</sup>

---

28 [제25조 제2항 주해] 국제경기연맹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5.7조 및 제7.1조에 더하여 ① 해당 연맹의 권한 하에 있는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연맹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해야 하는지 ②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인정되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은 무엇인지 ③ 국제경기연맹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범주에 포함될 경우, 선수는 소관 국제경기연맹에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인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의 요건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인정받기 위해 선수가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요청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인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선수에게 안내하고 지원한다.

국제경기연맹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의 기준 충족을 증명하기에 필요한 의료기록 또는 그 밖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건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회부되는 대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국제경기연맹에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③ 선수가 해당 약물 또는 방법에 대해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하게 되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제경기연맹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 국제경기연맹이 선수의 신청을 승인하여 선수와 도핑방지위원회에 통지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sup>29</sup>
3. 도핑방지위원회가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내경기대회를 제외하고 국제수준 경기와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4. 도핑방지위원회가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21일의 검토 기간이 만료되면 국내경기대회에서도 유효하게 된다.<sup>30</sup>

**제26조(치료목적사용면책의 기간 만료, 철회 또는 번복)** ①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승인된 기간 만료 시에 추가 통지 또는 그밖의 형식상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만료된다.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시에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부과한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판정 이후 승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sup>29</sup> [제25조 제3항 제2호 주해] 국제경기연맹이 선수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즉시 선수에게 통지된다.

<sup>30</sup> [제25조 제3항 주해]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을 대신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해당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검토 또는 항소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기간 만료, 취소, 철회 또는 번복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에 따라 해당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보유 또는 투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조치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결과관리 국제표준」 제5.1.1.1조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기간 만료, 철회 또는 번복 직후에 보고된 비정상분석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그러한 분석 결과가 해당 날짜 이전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제27조(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한 검토)** ①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4조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제8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국제경기연맹이 인정하지 않아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검토한다. 또한,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결정에 대해 도핑방지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사한다.
2.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그 외에도 영향을 받는 자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언제든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3. 검토한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이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그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그 결정을 번복한다.<sup>31</sup>

<sup>31</sup> [제27조 제1항 주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본조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검토 및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검토 결과 기준 결정이 번복된 경우에, 검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제91조 항소 권리의 목적상 해당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1조에 따라 번복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 제5장 검사 및 조사

- 제28조(검사와 조사의 목적)<sup>32</sup>** ① 이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Testing and Investigations)」을 포함한다.
- ② 검사와 조사는 도핑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검사와 조사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 및 조사 관련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 ③ 검사는 선수가 제13조 제1호(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제2호(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의 위반 여부에 관한 분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④ 조사는 도핑방지 정보의 수집,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확인 또는 절차 개시에 관한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하여 실시된다.

- 제29조(검사 권한)** ① 제30조에 명시된 경기대회 검사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도핑방지위원회는 제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모든 선수에 대하여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sup>32</sup> [제28조 주해] 도핑방지의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분석 결과와 데이터는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에 따라 다른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예: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3.2.2조 주해)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자격경기기간 중인 선수를 포함하여 검사 권한이 있는 모든 선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시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sup>33</sup>
- ③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0.7.10조에 따라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sup>34</sup>
- ④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직접 또는 경기단체를 통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자체 비용으로 추가 시료를 채취하거나 분석기관에 추가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경기대회 검사)** ① 경기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서 검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의 기구에만 부여되며, 국내경기대회의 검사 권한은 도핑방지위원회에, 국내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검사 권한은 해당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에 있다.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대회 기간 중에 경기장 밖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지만, 특정 경기대회의 검사를 주관하지 않는 도핑방지기구가 해당 대회 기간에 경기장에서 선수에 대해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도핑방지기구는 검사의 실시와 조정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경기대회 주관단체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도핑방지기구는 검사 권한이 있는 경기대회 주관단체로부터 받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절차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검사의 실시와 조정 방법에 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

<sup>33</sup> [제29조 제2항 주해] 도핑방지위원회는 가맹기구와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 실시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가 오후 11:00부터 오전 6:00 사이에 특정 60분을 지정하거나 해당 시간대에 검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선수가 도핑파 연루되어 있다는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혐의 없이 해당 시간대에 검사할 수 없다.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시간대의 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 검사 또는 검사 시도를 근거로 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

<sup>34</sup> [제29조 제3항 주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검사기구는 아니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 도핑방지기구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구는 경기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고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통지하기 전에는 해당 검사의 실시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가된 검사 실시의 권한 부여 과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검사는 경기기간 외 검사로 간주된다.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관리의 책임은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를 주관한 도핑방지기구에 있다.<sup>35</sup>

**제31조(검사 요건)**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율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을 피한다.

**제32조(검사대상명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검사대상명부(Registered Testing Pool, RTP)를 작성한다. 검사대상명부에 등재된 선수는 도핑방지 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제13조 제4호를 위반 할 경우 제66조 제2호에 따른 결과조치의 대상이 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과 해당 선수의 신원과 소재지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상호 조율 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의 명단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되는 선수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4회 이상 주기적으로 명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가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되거나 그 명부에서 제외되면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sup>35</sup> [제30조 제2항 주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경기연맹과 먼저 협의하여야 하고, 국제경기연맹이 국내 경기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도핑방지위원회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검사를 주관하는 도핑방지기구는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또는 그 밖에 도핑관리 절차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실을 선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소재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소재지정보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와의 효율적인 검사 조정을 위해서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1. 1박을 머무르는 거주지(예: 자택, 선수촌, 임시 숙소, 호텔 등)
2.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예: 선수촌 훈련, 학교 일정 등)
3. 참가 예정 경기대회 일정
4. 검사가 가능한 '특정 60분'과 그 장소

④ 선수가 자신이 속한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둘 중 어느 기구에서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수령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제경기연맹과 합의한 후 이를 선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선수는 합의된 기구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분기별로 자신의 소재지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신의 소재지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갱신하며,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수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 행위가 「결과관리 국제표준」 부록 B에 따른 소재지정보 불이행의 결과관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4호에 따른 제출불이행 또는 검사불이행으로 간주된다.

⑦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기간 동안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명시된 소재지정보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수가 자신의 은퇴 사실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선수가 더 이상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의 포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명부에서 제외되었음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에게 통지한 경우

⑧ 제29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는 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제공하는 소재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⑨ 선수의 소재지정보는 항상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며, 도핑관리의 계획 수립, 조정 또는 시행, 선수생체수첩 또는 그 밖에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지원,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 지원의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에 따라 이러한 목적과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경우 파기 시켜야 한다.

**제33조(검사대상후보명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제32조의 검사대상명부에 해당하는 선수보다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기준을 적용하는 검사대상후보명부(Testing Pool, TP)를 작성한다. 검사대상후보명부에 등재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4항에 따른 결과조치의 대상이 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과 해당 선수의 신원 및 소재지정보의 수집을 상호 조율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되는 선수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며, 선수가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되거나 해당 명부에서 제외되면 그 사실을 선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수에 대한 통지에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규정된 소재지정보 요구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제4항에 따른 결과조치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③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자신의 소재지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신의 소재지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갱신하며,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소재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소재지정보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와의 효율적인 검사 조정을 위해서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1. 1박을 머무르는 거주지(예: 자택, 선수촌, 임시 숙소, 호텔 등)
2. 경기/대회 일정
3. 정기 훈련 계획

④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 1차 서면경고
2. 2차 서면경고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이수
3. 3차 표적검사
4. 4차 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RTP)에 포함

⑤ 제29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는 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제공하는 소재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⑥ 선수의 소재지정보는 항상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며, 도핑관리의 계획 수립, 조정 또는 시행, 선수생체수첩 또는 그 밖에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지원,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 지원의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에 따라 이러한 목적과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경우 파기 시켜야 한다.

⑦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검사대상명부 또는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

에게 소재지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선수를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제34조(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 중 은퇴하고자 하는 선수는 은퇴 시 ‘은퇴확인서’를 작성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등록된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 선수가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수는 복귀 6개월 전에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 전에는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 및 선수의 국제경기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선수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본항을 위반하여 획득한 경기 결과는 실효된다. 다만, 선수가 자신이 참가한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은퇴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한 도핑방지기구에 서면으로 은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은퇴한 선수가 경기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복귀 6개월 전에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 의사를 통지하여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은퇴일(은퇴 사실을 도핑방지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의미함)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자격정지기간이 6개월 보다 긴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전에는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제35조(조사 및 정보수집)**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이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의 확인 또는 그 이후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선수, 기타 관계자,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출석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독립관찰프로그램)** 도핑방지위원회와 국내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경기대회에 대한 독립관찰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제6장 시료 분석

**제37조(인증된 분석기관의 사용·이용)** ① 이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는 「분석기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Laboratories)」 및 모든 관련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3조 제1호에 따른 비정상분석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시료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증한 분석기관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별도로 승인한 분석기관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 분석을 위한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승인 분석기관에 대한 선택 및 결정권이 있다.<sup>36</sup>

③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인증 또는 승인된 분석기관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제38조(시료와 데이터 분석의 목적)** 시료,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관리 정

<sup>36</sup> [제37조 제1항 주해] 제13조 제1호 위반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증한 분석기관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해 승인된 분석기관에서 수행한 시료 분석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그 밖의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기타 분석기관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증명될 수 있다.

보는 금지목록에 등재된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그 외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약물을 검출하거나, 도핑방지위원회가 DNA 또는 게놈 프로파일링(Genomic Profiling)을 포함하여 선수의 소변, 혈액, 기질 등에 포함된 관련 매개변수를 프로파일링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합법적인 도핑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sup>37</sup>

**제39조(시료와 데이터 연구)** 시료,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관리 정보는 선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료, 분석 데이터 또는 도핑관리 정보는 특정 선수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신원정보가 모두 제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19조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sup>38</sup>

**제40조(시료 분석과 보고의 기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6.4조에 따른 「분석기관 국제표준」과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제4.7조에 따라 분석기관이 시료를 분석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은 시료 분석 기본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하여 자체 판단과 비용으로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핑방지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다른 분석 결과와 동일한 효력과 결과조치를 발생시킨다.<sup>39</sup>

**제41조(결과관리 이전 또는 과정 중 시료의 추가 분석)** 분석기관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시료를 근거로 선수에게 제13조 제1호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시료에 대한 반복 또는

<sup>37</sup> [제38조 주해] 예를 들어, 도핑관리 관련 정보는 표적검사의 실시 또는 제13조 제2호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둘 모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sup>38</sup> [제39조 주해] 대부분의 의료계 또는 과학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 보증, 품질 향상, 방법 개선 및 개발 또는 대조 모집단 확보를 위한 시료와 관련 정보의 사용은 연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허용된 비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료와 관련 정보는 「분석기관 국제표준」 및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의 요건뿐만 아니라 세계도핑방지규약 제19조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하여 특정 선수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신원정보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sup>39</sup> [제40조 주해] 본조의 목적은 '지능적 검사'의 원칙을 시료 분석 메뉴에도 적용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핑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도핑 근절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료 분석 메뉴가 증가하면 시료 분석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부 종목과 국가에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에게 통지한 이후 해당 시료에 대한 추가 분석은 선수의 동의 또는 청문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다.

#### 제42조(음성 보고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제기되지 않은 시료의

**추가 분석)** ① 분석기관이 시료를 음성으로 보고하거나 시료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로 귀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료는 시료채취를 지시한 도핑방지기구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제38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되고 추가 분석될 수 있다.

②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가 보관 중인 시료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지시한 도핑방지기구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관리도 담당하여야 한다.

③ 세계도핑방지기구 또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요청에 따라 시료를 보관하거나 추가 분석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요청한 세계도핑방지기구 또는 도핑방지기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따른 시료의 추가 분석은 「분석기관 국제표준」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43조(A 시료 또는 B 시료의 분리)

세계도핑방지기구, 결과관리 권한이 있는 도핑방지기구 또는 양 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에서 A 시료 또는 B 시료를 나누고, 분리된 시료를 시료 분석과 확인 목적으로 각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44조(세계도핑방지기구의 시료 및 데이터 보유권리)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사전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분석기관 또는 도핑방지기구에서 보관 중인 시료, 분석 데이터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료 또는 데이터를 보관 중인 분석기관 또는 도핑

방지기구는 즉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시료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시료 또는 데이터를 취득하기 전에 분석기관 또는 도핑방지기구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 후 적당한 시일 안에 해당 시료 또는 데이터를 보관하던 분석기관과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취득한 시료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그 시료 또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관리 책임을 맡길 수 있다.<sup>40</sup>

## 제7장 결과관리

- 제45조(결과관리 수행의 책임)** ① 이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는 「결과관리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Results Management)」을 포함한다.
- ② 결과관리 책임은 제42조, 제44조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7.1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시료채취를 주관한 도핑방지기구에 있으며 그 절차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다만, 시료채취와 관련되지 않은 결과관리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최초로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통지한 도핑방지기구에 책임이 있다.
- ③ 국가도핑방지기구 규정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 거주자, 자격 소지자(license holder) 또는 스포츠기구의 회원이 아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국가도핑방지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국가도핑방지기구가

<sup>40</sup> [제44조 주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시료 또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저항 또는 거부는 부정행위, 공모 또는 「가맹기구의 규약준수 국제표준」에 규정된 비준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석기관 국제표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분석기관 또는 도핑방지기구는 필요한 경우 확보한 시료 또는 데이터가 해당 국가에서 운반이 지체되지 않도록 세계도핑방지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가맹기구에 의한 비준수 또는 타인의 도핑 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 또는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독자적으로 행하고, 이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그 결과조치에 대한 방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관리는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국제경기연맹 또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제3자가 맡아 수행한다.

- ④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과 관련한 결과관리는 「결과관리 국제표준」의 규정에 따라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하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의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을 결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되며, 이 정보는 다른 관련 도핑방지기구에도 제공된다.
-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7조에 따른다.
- ⑥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특정 상황에서 도핑방지위원회에 결과관리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정한 합리적 기간 내에 결과관리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는 비준수 행위로 간주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권한이 있고 결과관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도핑방지위원회를 대신하여 결과관리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고, 그러한 도핑방지기구가 없는 경우, 그 외 결과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지정한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결과관리의 수행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준수 행위로 간주된다.

#### 제46조(결과관리의 범위) 도핑방지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종목의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한다.<sup>41</sup>

<sup>41</sup> [제46조 주해] 결과관리 결정에는 임시자격정지가 포함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의한 경기결과의 실효를 제외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인한 모든 결과조치와 도핑방지규정위반 유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 및 결과조치의 부과는 모든 국가와 종목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기기간 중 채취한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근거로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에 따라 그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결과는 제63조에 의해 실효되고, 시료채취일부터 자격정지기간 개시일 이전에 획득한 기타 모든 경기결과는 제76조에 의해 실효된다. 경기대회 검사에서

1. 도핑방지규정위반의 발생 여부, 임시자격정지의 부과 여부, 도핑방지규정위반 이력 조회, 혐의 통지, 청문없는 결정 등
2. 제63조와 제76조에 따른 실효, 메달과 상금의 물수, 자격정지기간 및 재정적 결과조치를 비롯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모든 결과조치

**제47조(결과관리 결정의 통지)**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2장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선수와 기타 관계자, 관련 기구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결과관리 결정을 통지한다.

**제48조(분석 결과의 접수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분석기관으로부터 전자우편 또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석 결과를 통지받는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주관단체,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에게 ‘음성’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49조(잠재적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검토와 통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 및 통지를 수행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당사자에게 해당 혐의를 통지한다.

③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통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성명과 성별
2. 국적
3. 종목과 세부종목
4. 선수의 경기력 수준
5.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
6. 시료채취 날짜

비정상분석결과가 나온 경우,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는 제64조에 따라 시료채취 이전 경기에서 선수가 획득한 다른 개인 결과까지 실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분석기관에서 보고받은 분석 결과
8. 그 밖에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결과관리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정보
9. 제13조 제1호 외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 위반한 규정과 위반 혐의의 근거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관련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혐의 통지 전 도핑방지규정위반 이력의 사전조회)**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제49조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통지하기 전에,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조회하거나 세계도핑방지기구 등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문의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거 도핑방지규정 위반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B 시료 분석)** ①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인정하고 B 시료 분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핑방지위원회는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용으로 언제든지 B 시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제49조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시 B 시료 분석 요청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고, 선수가 B 시료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분석기관과 협의하여 B 시료 분석을 위한 일정 및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B 시료 분석 일시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와 분석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은 B 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⑥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분석기관은 B 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선수와 선수대리인이 모두 입회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⑦ B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는 선수와 경기단체,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통지되며,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된다. 이 경우, 선수에게 A 시료 비정상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혐의 통지는 철회되고 이와 관련한 결과관리 절차가 일체 중단되며, 제52조에 따라 선수에게 부과된 임시자격정지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3조 제2호에 따른 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B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선수와 경기단체에 통지하고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선수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제73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에서 1년을 감경받을 수 있고, 제52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자발적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52조(임시자격정지)<sup>42</sup>**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특정약물이나 특정방법을 제외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상수첩결과가 접수되면, 제49조에 따른 혐의 통지 시 또는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해당 선수에게 의무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적인 임시자격정지의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

- 선수가 임시청문에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오염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했

<sup>42</sup> [제52조 주해] 도핑방지위원회는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기 전에 이 규정과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른 내부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을 가능성의 높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위반이 남용약물과 관련 있고, 선수가 제6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특정약물, 특정방법, 오염된 제품에 관한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그 밖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는 선수의 B 시료 분석 또는 제8장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청문 이전에 선택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임시자격정지는 「결과관리 국제표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제8장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③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임시자격정지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임시청문의 기회
2.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된 후 적절한 시기에 제8장에 따른 신속한 청문의 기회

④ 임시자격정지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할 수 있다.

#### 1. 선수의 경우

- 가. B 시료의 분석 결과 수령 또는 B 시료 분석 포기 후 10일 이내
- 나. 비정상분석결과 외 다른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
- 다. B 시료의 분석 결과 또는 비정상분석결과 외 다른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최초 경기일을 포함한 10일 이내<sup>43</sup>

<sup>43</sup> [제52조 제5항 제1호의 다목의 주해] 예를 들어, B 시료 분석 결과가 7월 20일에 보고된 경우, 선수는 7월 30일까지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할 수 있다. 만약 7월 25일에 예정된 경기가 있다면, 선수는 해당

2. 기타 관계자의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

⑥ 선수가 제5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임시자격정지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임시자격정지의 효력과 동일하다. 다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 수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앞서 이행한 임시자격정지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⑦ A 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에 따라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후속 B 시료 분석 결과에서 A 시료 분석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선수는 더 이상 제13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임시자격정지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선수 또는 팀이 제13조 제1호의 위반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후속 B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A 시료 분석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선수 또는 팀이 해당 경기대회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참가가 가능하다면 해당 선수 또는 팀은 경기대회에 계속해서 참가할 수 있다.

⑧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그 기간 동안 제79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경기나 대회 또는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sup>44</sup>

⑨ 도핑방지위원회는 본조에 따라 부과된 임시자격정지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경기단체,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고, 도핑방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02조 제3항 또는 제106조에 따른 임시자격정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자격정지 사실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임시청문의 개최)**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5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경우 임시청문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에 참가한 후 7월 30일까지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sup>44</sup> [제52조 제8항 주해]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우, 선수의 참가를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조차도 할 수 없다.



- ② 임시청문을 요청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임시자격정지 부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시자격정지의 부과에 대한 취소 이유를 포함한 문서를 도평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과된 임시자격정지는 임시청문의 결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③ 제재위원회 위원장은 임시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임시자격정지 부과의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위원회 위원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④ 임명된 제재위원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도평방지위원회는 당사자와 경기단체에 해당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임시청문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제11장 규정에 따라 국가항소기구에 신속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5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의무적 임시자격정지의 부과를 취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제54조(청문권리의 포기)** ① 도평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위반을 인정하고 도평방지위원회의 결과조치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임시청문, 제재위원회 및 항소 절차상 청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도평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평방지위원회로부터 위반 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혐의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권될 수 있다.

**제55조(청문없는 결정)** ① 도평방지위원회는 제54조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시

청문, 제재위원회 및 항소 절차상의 청문을 시행하지 않고, 청문없는 결정을 한다.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청문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 「결과관리 국제표준」 제9조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결정의 이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제76조에 따른 경기결과의 실효, 제재조치의 부과 사유 등이 포함된 결정문을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본조에 따른 청문없는 결정은 확정적이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본 결정에 대한 효력을 임시청문, 제재위원회 및 항소 절차에서 다툴 수 없다.
-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 내용을 영문 요약본으로 제88조에 따른 항소권이 있는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 ⑤ 도핑방지위원회는 본조에 따른 결정 내용을 제102조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은퇴선수에 대한 결과관리)**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결과관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은퇴했으나 도핑방지규정위반 당시에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결과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과관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의 결과관리 절차 진행 중에 은퇴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결과관리 절차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sup>45</sup>

## 제8장 제재위원회

**제57조(제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

<sup>45</sup> [제56조 주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도핑방지기구의 관할권에 귀속되기 전에 행한 행위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체육단체에서 해당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 대해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② 제재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하며, 제재위원회의 구성, 임기, 전문 경력, 운영상 독립 보장 및 충분한 재정지원에 관한 「결과관리 국제표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 사건의 조사 및 결과관리 절차에 관여한 자는 제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sup>46</sup>로 임명될 수 없다. 특히, 특정한 사건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관여한 자, 같은 사건에서 항소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의 제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④ 제재위원회 위원은 법률, 스포츠, 의료, 과학 등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핑방지 경험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제재위원회의 권한)** ① 제재위원회는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시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히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적절한 결과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재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나 제3자의 간섭 없이 사건을 심리하고 의사 결정 절차를 수행하며, 청문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 ③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결과조치는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이외의 법원, 중재기구 또는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

**제59조(공정한 청문을 위한 원칙)** ① 제재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와 청문 일정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sup>46</sup> [제57조 제3항 주해] 간사의 개념은 결정의 초안 작성 또는 심의에 관계된 사람까지 확장된다.

임시자격정지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혐의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신속한 청문의 개최가 요구되는 경우, 제재위원회의 허가를 조건으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다.<sup>47</sup>
- ③ 청문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와 제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화상장치 등을 이용한 진행도 가능하다.
- ④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 역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개 청문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개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사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개 청문이 거부될 수 있다.
- ⑤ 도핑방지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녹음 또는 기록하고, 이를 소유하고 보관한다.

**제60조(청문 절차)**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통지한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54조에 따라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건은 제재위원회로 회부되며, 제재위원회의 청문과 결정은 「결과 관리 국제표준」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서 수행된다.

- ② 제재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사건의 청문을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제재 위원 중 1명 또는 3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3명을 지명하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 1명과 의사 또는 약사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은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정당한 의심을 할 만한 사실이나 상황이 없음을 진술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sup>47</sup> [제59조 제2항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에 따라 선수의 대회 참가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직전 또는 대회 중 사건의 해결이 선수가 획득한 경기결과의 유효성이나 대회의 계속적 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속하게 청문이 진행될 수 있다.



한다. 임명된 위원이 어느 당사자와 연관되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위원장은 회부된 사건을 담당할 대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신이 공정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청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청문 일정을 통지받은 후 청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권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복권될 수 있다.

⑤ 제재위원회는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각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문을 연기하거나 휴회할 수 있다.

⑧ 제재위원회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 인하여 청문 진행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 불응은 최종결정 시 참작될 수 있다.

⑨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경기연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기단체는 참관인으로 청문에 참석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참관인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 및 청문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1조(제재위원회 결정의 통지)** ①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청문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관리 국제표준」 제9조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날짜와 서명이 포함된 결정문의 형태로 관련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교부되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결정문에는 결정의 이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제76조에 따른 결과의 실효, 제재 조치의 부과 사유 등이 포함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영문 요약본으로 제88조에 따른

항소권이 있는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항소 될 수 있다.

**제62조(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의 단독 청문)** 국제수준과 국가수준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기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 규정상의 다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단독으로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48</sup>

## 제9장 개인에 대한 제재

**제63조(개인 경기결과의 자동 실효)** 개인종목의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경기에서 획득한 개인 경기결과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메달과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의 결과조치가 부과된다.<sup>49</sup>

**제64조(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대회 전체 경기결과의 실효)** ① 경기 대회 기간에 또는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경우, 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결정에 따라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를 포함한 결과 조치가 부과되고 그 대회에서 획득한 모든 개인 경기결과가 실효될 수 있다.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다른 경기결과에 대한 실효 여부를 판단할 때에

<sup>48</sup> **[제62조 주해]**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제 또는 국가수준에서 1차 청문을 개최한 뒤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해당 건을 다시 청문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치면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당사자 모두가 일 회의 청문으로 각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선수 또는 도핑방지기구는 두 차례 이상의 청문을 위하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도핑방지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청문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조 규정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와 도핑방지위원회가 합의하여 항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포기는 합의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항소권이 있는 다른 항소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sup>49</sup> **[제63조 주해]** 단체종목의 경우, 선수 개인이 받은 경기실적은 모두 실효된다. 다만, 팀의 실격은 제8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체종목은 아니지만 팀 단위로 결과가 매겨지는 종목의 경우, 팀 선수 한 명 이상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면 해당 팀에 대한 실격 또는 그 밖의 징계 조치는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는 선수가 범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심각성과 다른 경기에서 실시한 검사에서의 음성 여부 등을 감안한다.<sup>50</sup>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위반에 대한 본인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증명할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경기 외에 선수의 다른 경기결과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 경기결과는 실효되지 않는다.

**제65조(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보유에 대한 자격정지)** ① 제13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8조,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경 또는 유예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이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이 없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해당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sup>51</sup>

나. 도핑방지규정위반이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이 있고, 해당 위반이 고의였음을 도핑방지기구가 증명한 경우

2.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조에서 사용되는 ‘고의’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행동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명백히 무시한 것을 의미한다.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의 비정상분석 결과로 인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 검출된 성분이 특정약물에 해당하고 선수가 그 금지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의’가

<sup>50</sup> [제64조 제1항 주해] 제63조는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인 한 경기(예: 100m 배영)의 결과를 실효시키는 반면 본조는 경기대회(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경기결과를 실효시킬 수 있다.

<sup>51</sup>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해] 이론적으로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왔는지 밝히지 않고 도핑방지규정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13조 제1호 위반의 경우 선수가 금지약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고의가 없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검출된 성분이 특정 약물에 해당하지 않고 선수가 그 금지약물이 경기력 향상과 무관하게 경기기간 외에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의’로 간주되지 않는다.<sup>52</sup>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용약물이 포함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한다.

1. 선수가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3개월로 한다. 또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인정한 남용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이 자격정지기간은 제69조의 규정을 근거로 감경될 수 없다.<sup>53</sup>
2. 선수가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중에 섭취, 사용 또는 보유했고, 그 섭취, 사용 또는 보유가 경기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경우, 그 섭취나 사용, 보유는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67조에 따른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제66조(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1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65조 도핑방지규정위반 이외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제3호(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제5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시료채취에 실패한 경우,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 외에 선수 또

<sup>52</sup> [제65조 제2항 주해] 본항은 제65조의 목적으로만 적용되는 ‘고의’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sup>53</sup> [제65조 제3항 제1호 주해] 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 프로그램의 승인 여부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끄러움(shame)’과 대비되는 합법적이고 평판이 좋은 치료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승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합법적 치료 프로그램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한다.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기간이 없는 견책에서 최대 2년으로 한다.

2. 제13조 제4호(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선수의 직전 소재지정보 변경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선수가 검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3조 제7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제8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연루된 위반은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특정약물 이외의 위반을 선수지원요원이 범한 경우, 해당 선수지원요원은 영구 자격정지가 된다. 또한, 제13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위반이 국내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sup>54</sup>
4. 제13조 제9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로 한다.
5. 제13조 제10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

<sup>54</sup> 【제66조 제3호 주해】 선수의 도핑에 관여하거나 도핑을 은폐하는 일에 연루된 자에게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단체의 권한은 자격, 회원지위 또는 그 밖에 체육 관련 혜택을 제한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선수지원요원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도핑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조치가 된다.

와 사건의 정황에 따라 1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sup>55</sup>

6. 제13조 제11호(제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위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로 한다.<sup>56</sup>

**제67조(자격정지기간의 연장)**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3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위반을 제외한 도핑방지규정위반 건에서 기본 제재보다 더 긴 자격정지기간의 부과를 정당화하는 가중처벌의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위반의 경중과 가중처벌 상황의 성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57</sup>

**제68조(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신의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련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sup>58</sup>

<sup>55</sup> [제66조 제5호 주해] 제13조 제10호에 명시된 ‘기타 관계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는 제85조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sup>56</sup> [제66조 제6호 주해] 제13조 제5호와 제11호를 모두 위반하는 행위는 더 엄격한 제재를 수반하는 위반에 근거하여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sup>57</sup> [제67조 주해] 본조는 제13조 제7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제8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제9호(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또는 제11호(제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가중처벌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영구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이미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sup>58</sup> [제68조 주해] 본조 및 제69조 제2항은 제재의 부과에만 적용되며,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본조는 선수가 합당한 주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에 의한 방해행위가 있었음을 선수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다음의 상황에서는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라벨 부작 오류 또는 오염된 비타민 또는 보충제 섭취(선수는 자신이 섭취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제13조 제1호 가목), 보충제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됨)에 따른 양성 반응 결과, ②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는 트레이너에 의한 금지약물의 투여(선수는 자신의 의료진을 선택하고 의료진에게 금지약물을 복용할 수 없음을 알릴 책임이 있음) ③ 선수의 음식 또는 음료에 배우자, 지도자 또는 선수 주변의 관계자가 행한 방해행위(선수는 자신이 섭취하는 것과 자신의 식음료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사건별 특수한 사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근거하여 제69조에 따른 제재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 제69조(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①

제13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1.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남용약물을 제외한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되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기간이 없는 견책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2. 오염된 제품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고, 남용약물을 제외하고 검출된 금지약물이 오염된 제품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기간이 없는 견책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sup>59</sup>

### 3.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가 남용약물과 관련되지 않은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사실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기간이 없는 견책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②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본인의 중대

<sup>59</sup> [제69조 제1항 제2호 주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본호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검출된 금지약물이 오염된 제품에서 기인했다는 것 외에도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선수가 오염된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된 제품의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근거한 제재의 감경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선수가 금지약물의 출처를 밝혔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령 선수가 실제로 오염된 제품을 사용했는지, 선수가 오염된 제품을 도핑검사서에 기재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호는 일부라도 제조공정을 거친 제품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이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수돗물이나 호수물과 같이 '제품이 아닌' 환경적 오염으로 인해 비정상분석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제68조에 따른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 규정이 적용된다.

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으나 감경된 자격정지기간은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이분의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자격정지인 경우, 감경된 자격정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항에 따라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제70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추가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sup>60</sup>

## 제70조(이 규정의 위반을 적발 또는 증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유예 등)**<sup>61</sup>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11장 규정에 따른 항소의 최종결정 또는 항소 제기기간 만료 이전에 도핑방지기구, 형사·사법 당국 또는 징계기구 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경기결과의 실효와 일반공개를 제외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도핑방지기구가 타인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제기하거나 혐의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자의 정보 제공으로 형사·사법 당국 또는 징계기구 등에서 타인의 형사상 위법행위 또는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여 이를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결과관리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가맹기구, 인증 분석기관 또는 「분석기관 국제표준」, 선수수첩관리단에 대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또는 기술문서의 비준수를 이유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4. 도핑 및 스포츠 영역 이외에 발생한 직무규정 위반 또는 형사상 위법 행

<sup>60</sup> [제69조 제2항 주해] 본항은 고의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요소인 규정(제13조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 특정 제재의 요소인 규정(제65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격정지의 범위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규정에 이미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도핑방지규정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sup>61</sup> [제70조 주해]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도핑방지규정위반 사실까지 기꺼이 밝히고자 하는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기타 관계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위에 관하여 징계기구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형사 당국에 기소되어 이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정하는 경우

-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1장 규정에 따른 항소의 최종결정 또는 항소 제기 기간의 만료 후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와 관련 국제경기연맹의 승인을 받은 때에만 실질적 도움이 없었다면 적용되는 결과조치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자격정지 유예기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범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심각성 정도와 도핑 근절, 세계도핑방지규약 준수, 스포츠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노력을 고려하여 실질적 도움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나, 유예기간을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사분의 삼 이상으로 할 수 없다.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일 때에는 본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자격정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항에서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에는 제75조 제2항에 따라 추가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권리유보합의를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 받는다.
-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지속적인 협조를 거부하여 실질적 도움의 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유예한 자격정지기간을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으로 되돌려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자격정지기간의 유예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는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권이 있는 자가 항소할 수 있다.
- 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실질적 도움의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1장 규정에 따른 항소 결정 이후를 포함한 결과관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핑방지위원회가 결정한 자격정지기간의 유예 또는 그 밖의 결과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조에서 정한 유예 기간을 상회하는 자격정지기간의 유예, 일반공개의 제외, 상금의 반환 또는

벌금이나 비용 납부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승인한 결과조치도 본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래의 제재조치로 되돌릴 수 있다. 제11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항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세계도핑방지 기구의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⑥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질적 도움을 이유로 원래 적용되는 제재의 일부분을 유예할 경우, 해당 유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이유를 기재한 통지를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8조에 명시된 항소권 있는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질적 도움에 관한 합의사항 또는 제공받는 실질적 도움의 성격에 대하여 일반공개의 제한 또는 유예를 정하는 기밀유지협약의 체결 권한을 도핑방지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71조(자인이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유일한 증거인 때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시료채취 결과의 통지 또는 제13조 제1호 이외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전에 자발적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인정하고, 이러한 자인이 당시에 신빙성 있는 유일한 위반의 증거인 경우에는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이분의 일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sup>62</sup>

**제72조(제재의 감경에 대한 복수 근거의 적용)**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중 두 개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감경이나 유예를 적용하기 이전에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0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

<sup>62</sup> [제71조 주해] 본조는 어떠한 도핑방지기구도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나서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자인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곧 적발될 것임을 예견하고 자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정도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자인하지 않았다면 적발되었을 가능성에 근거한다.



격정지기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나 원래 적용되는 기간의 사분의 일 이하로는 할 수 없다.

- 제73조(결과관리의 합의)**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67조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하여 4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혐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위반을 인정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정지기간을 수용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기간을 1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조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자격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없다.<sup>63</sup>
- ②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를 인정한 후 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결과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와 위반의 경중, 과실의 정도, 위반 인정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제64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기간을 시료채취 일자 또는 다른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이 적용되어 자격정지기간이 감경되거나 기산일이 소급되는 경우에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재 부과를 수용한 날 또는 이행된 임시자격정지기간의 개시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결정된 자격정지기간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제2항에 따른 결과관리의 진행 여부에 관한 결정,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및 기산일에 관한 결정은 청문기구

<sup>63</sup> [제73조 제1항 주해] 예를 들어,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따른 제13조 제1호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4년의 자격정지를 제시할 경우, 선수는 본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3년의 자격정지를 수용하면 자격정지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으나 추가적인 감경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사건은 규정상의 모든 청문 절차 없이 종결된다.

또는 제11장 규정에 따른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제2항에 따른 결과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권리유보합의를 조건으로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와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인정 및 결과조치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sup>64</sup>

**제74조(재위반)**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시, 자격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중 상대적으로 긴 기간으로 한다.

1. 자격정지 6개월
2. 다음 각목의 범위에 속하는 자격정지기간. 이 범위에 속하는 자격정지기간은 두 번째 위반과 관련된 상황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가.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에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첫 번째 위반이었다면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
  - 나.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두 배

② 세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시, 영구자격정지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위반이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13조 제4호의 위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정지기간을 8년부터 영구자격정지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결정된 자격정지기간은 제70조 또는 제71조의 적용에 따라 추가로 감경될 수 있다.

④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증명한 경우, 해당 위반은 본조에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

<sup>64</sup> [제73조 주해] 모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은 결과관리의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제재에 대하여 추가 감경이나 가중을 할 수 없다.



한, 제6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재받은 도핑방지규정위반도 본조에서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5조(잠재적인 재위반에 관한 특별규정)** ① 제74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7장에 따른 혐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통지를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이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증명한 경우에만 추가 위반행위가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보며, 해당 위반행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한 제재가 적용되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결과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며, 제67조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선수가 획득한 모든 경기결과는 일련의 위반행위 중 먼저 발생한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제76조에 따라 실효 처리된다.<sup>65</sup>

②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을 통지하기 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추가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그 위반 시점이 첫 번째 통지되는 위반행위의 전후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독립된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추가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산정하고, 그 자격정지기간은 먼저 통지가 이루어지는 위반에 부과된 자격정지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기산한다. 본항이 적용되는 각각의 위반은 제74조에 따른 재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본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와 관

---

<sup>65</sup> [제75조 제1항 주해]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재 부과 후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통지 전에 발생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핑방지위원회는 가중처벌 상황을 포함하여 두 위반을 동시에 판단했을 때 부과되었을 제재에 근거하여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련하여 도핑관리 절차 과정에서 제13조 제5호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독립된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산정하고, 원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부과된 자격정지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기산한다. 본항이 적용되는 각각의 위반은 제74조에 따른 재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본다.

- ④ 자격정지 중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재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이미 부과되어 진행 중인 자격정지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기산한다.
- ⑤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재위반으로 보아 제74조 및 제7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이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제76조(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후 참가하는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결과의 실효)** 경기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제63조(개인 경기결과의 자동 실효)에 따라 그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결과는 자동 실효된다. 경기기간 중 또는 경기기간 외를 불문하고 해당 선수의 양성 시료가 채취된 날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개시된 날 사이에 획득한 모든 경기결과는 메달,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의 결과조치와 더불어 실효된다. 다만, 이러한 실효 및 결과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up>66</sup>

**제77조(상금의 몰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단체는 관련 규정 또는 대회개최요강 등에 따라 위반 선수에게 지급된 상금을 몰수하여야 한다.<sup>67</sup>

**제78조(자격정지기간의 기산)** ① 본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를 부과한 제재위원회 결정일, 청문없는 결정

<sup>66</sup> [제76조 주해] 이 규정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규정 위반자에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损害防護権)를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up>67</sup> [제77조 주해] 상금 몰수의 의무가 있는 단체는 본조에 따라 몰수한 상금을 도핑이 없었다면 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 결과관리 합의일 또는 달리 자격정지기간이 부과된 날부터 기산된다. 선수가 이미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로 자격정지의 제재를 받으면 그 자격정지기간은 기존의 자격정지기간 만료 후에 시작된다.

②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 절차나 그 밖에 도핑관리 업무 지연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제재위원회는 시료채취일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일자까지 자격정지기간을 소급하여 기산할 수 있다. 소급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포함하여 자격정지기간 중에 획득한 경기결과는 모두 실효된다.<sup>68</sup>

③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임시자격정지를 준수한 경우, 그 임시자격정지기간은 최종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에 포함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임시자격정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임시자격정지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통지된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이 이행되고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이미 이행된 자격정지기간은 최종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에 포함된다.

④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 수용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 기간은 최종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에 포함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자발적 임시자격정지 수용서는 제99조 제4항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sup>69</sup>

⑤ 경기 불참의 자의성 또는 타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임시자격정지 발효일 또는 자발적 임시자격정지 발효일 이전 기간은 자격정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단체종목에서 팀에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우

<sup>68</sup> [제78조 제2항 주해] 제13조 제1호 이외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우, 도핑방지기구가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을 밝혀내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적발을 피하려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항을 적용하여 자격정지기간을 소급하여 기산해서는 안 된다.

<sup>69</sup> [제78조 제4항 주해] 선수의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 수용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선수의 자인이 아니며, 이를 선수에게 불리한 추론을 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를 제외하고, 자격정지기간은 자격정지를 부과한 제재위원회 결정일, 청문 없는 결정일, 결과관리 합의일 또는 달리 자격정지기간이 부과된 날부터 기산된다. 팀에 부과되었거나 팀이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이행된 임시자격정지 기간은 전체 자격정지기간에 포함된다.

**제79조(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 ①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기간에 허가된 도핑방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경기 또는 활동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1. 세계도핑방지규약 가맹기구 또는 가맹기구의 회원단체, 가맹기구 회원단체의 클럽, 그 외 회원단체가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활동
2. 프로리그, 국제·국내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3. 정부 기관의 자금이 지원되는 전문체육 또는 전국단위 스포츠 활동

② 4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부과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4년의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에는 가맹기구 또는 가맹기구의 회원이 주관하지 않거나 이들의 관할 내에 있지 않은 지역 경기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 경기대회가 직·간접적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전국선수권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자격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대회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대상자와 연관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자격정지 중에 있는 선수는 해당 자격정지기간 동안 검사 대상이 되고, 도핑방지위원회의 소재지정보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sup>70</sup>

<sup>70</sup> [제79조 주해] 예를 들어,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제8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소속된 경기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회원이나 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클럽에서 주관하는 전지훈련, 시범경기 또는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비가맹 프로리그(예: NHL, NBA 등) 또는 비가맹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나 비가맹 국내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활동’에는 본조에 명시된 단체 또는 기구의 이사, 임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행정 활동 등도 포함된다. 한 종목에 부과된 자격정지는 다른 종목에서도 인정된다.(제106조 결정의 효력 및 범위 참조) 자격정지기간 중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지도자 또는 선수지원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활동에 연루된 선수가 제13조 제10호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 중 달성한 경기실적은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내 경기단체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0조(훈련 복귀)** 제79조의 예외로서, 선수는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만료일 이전 2개월의 기간과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팀 훈련에 복귀하거나 가맹기구 또는 회원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sup>71</sup>

**제81조(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 위반)** ①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에 제79조에 따른 참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참가에서 획득한 결과는 실효되며, 동일한 자격정지기간이 원래의 자격정지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부과된다. 본조에 따른 제재는 견책을 포함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결정은 최초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결과관리를 진행한 도핑방지기구에서 한다. 이 결정은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 될 수 있다.

② 임시자격정지기간에 참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임시자격정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참가로 인한 성적 등 결과는 실효된다.

③ 선수지원요원이나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의 참가 금지 규정 위반을 지원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지원에 대하여 제13조 제9호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82조(자격정지기간 중 재정지원의 중단)** 도핑방지위원회와 정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는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제재가 감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핑방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재정지원, 그 밖에 스포츠와 관계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sup>71</sup> [제80조 주해] 많은 단체종목과 일부 개인종목(스키점프, 체조 등)에서 선수는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경기에 참가할 준비를 하기 위해 훈련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없다. 본조에 따른 훈련 기간 동안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훈련 외에 제79조에 명시된 어떠한 경기 또는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83조(제재의 공개)** 제재의 필수 공개 항목은 제10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장 단체종목 및 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제84조(단체종목에 대한 제재)** ① 단체종목에서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팀 소속의 선수 두 명 이상이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대회 기간에 해당 팀에 대한 적절한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체종목에서 특정 팀 소속의 선수 세 명 이상이 경기대회 기간에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개개인에게 부과된 결과조치에 더하여 해당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팀에도 기록 몰수, 실격, 그 밖의 조치 등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③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경기대회의 단체종목에 대해 제2항에 규정된 결과조치보다 더 엄격한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대회 규정을 정할 수 있다.<sup>72</sup>

**제85조(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도핑방지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된 경기단체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을 인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국제경기연맹에 해당 경기단체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에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단체의 회원자격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up>72</sup> [제84조 제3항 주해] 예를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대회 기간에 더 적은 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근거하여 팀을 실격시키도록 제재기준을 상향 설정할 수 있다.



## 제11장 항소<sup>73</sup>

**제86조(항소의 관할)** ①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와 관련한 사건 또는 국제수준 선수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사건에 대한 도핑방지 위원회와 제재위원회의 결정은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해당하는 경기단체는 제85조에 따른 도핑방지위원회 제재 결정에 대하여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제87조(국제수준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 ① 본조에 따른 항소 절차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 관련 중재 규칙(CAS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이 규정 제93조와 제94조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sup>74</sup>

② 본조에 따른 항소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적용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2. 관련 국제경기연맹
3. 도핑방지위원회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국가도핑방지기구
4. 올림픽대회 또는 패럴림픽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5. 세계도핑방지기구

**제88조(국가수준 선수 등의 항소)** ① 본조에 따른 항소는 국가항소기구 규정 및 이 규정 제93조와 제94조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규정된 절차에

<sup>73</sup> [제11장 주해] 세계도핑방지규약의 목적은 도핑방지와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절차와 항소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2장(기밀유지 및 보고)에서 다룬다. 세계도핑방지기구를 포함하여 특정 관계자와 단체는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쟁자의 경기결과 실효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선수 또는 소속 경기단체는 제11장에 따른 항소권이 있는 관계자와 단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sup>74</sup> [제87조 주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판정의 취소 및 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 국가항소기구에 하여야 한다.

② 본조에 따른 항소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의 적용을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2. 관련 국제경기연맹
3. 도핑방지위원회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국가도핑방지기구
4. 올림픽대회 또는 패럴림픽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5. 세계도핑방지기구

③ 본조의 규정에 따른 항소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국가항소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독립된 국가항소기구에서 운영한다.

② 국가항소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며, 「결과관리 국제표준」,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제외한 항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90조(항소의 대상)** 항소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해 결과조치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은 결정 또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
2. 시효의 만료 등 절차상의 이유로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
3.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은퇴선수의 경기복귀 전 6개월 통지 요건의 예외



를 허용하지 않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

4. 세계도핑방지규약 제7.1조에 따라 결과관리를 위임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
5. 도핑방지위원회가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결정 또는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른 조사 결과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결정
6. 임시청문의 결과 임시자격정지를 부과 또는 취소하는 결정
7. 도핑방지위원회의 제52조 비준수
8.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또는 그 결과조치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
9. 제70조에 따른 결과조치의 유예 또는 유예 불허 결정, 유예된 자격정지 기간의 취소 또는 취소하지 않은 결정
10. 세계도핑방지규약 제7.1.4조와 제7.1.5조의 비준수
11. 도핑방지위원회의 제73조 제1항 비준수
12. 제81조에 따른 결정
13. 도핑방지위원회가 제13장에 따라 다른 도핑방지기구에서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결정
14.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7.3조에 따른 결정

**제91조(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과 관련한 항소)**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국제 수준의 선수가 아닌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선수는 해당 거부 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국가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국가항소기구의 결정은 구속력 있는 최종결정이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제27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결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②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경기연맹을 대신해서 도핑방지위원회가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신청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

용면책에 관한 결정으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검토되지 않은 결정, 또는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나 번복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 있다.<sup>75</sup>

③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치료목적사용면책에 관한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제경기연맹은 해당 결정에 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만 항소할 수 있다.

**제92조(임시자격정지 부과에 대한 항소)** 이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른 임시청문에서 임시자격정지의 부과를 취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임시자격정지를 부과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만이 항소할 수 있다.

**제93조(항소기간)**<sup>76</sup> ① 항소 당사자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관리 권한을 가진 도핑방지기구에 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요청이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요청한 자는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sup>75</sup> [제91조 제2항 주해] 이 경우,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치료목적사용면책에 관한 결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 후 번복되지 않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이 아니라,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이 된다. 다만,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한 항소기간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해당 결정에 관한 판단을 통지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 사실을 통지받아야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에 참여할 수 있다.

<sup>76</sup> [제93조 주해]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항소 제기기간은 해당 결정문의 수령 이후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그 당사자의 항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 제기기간은 다음 중 늦은 날로 한다.

1. 해당 사안의 모든 항소권자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1일
2. 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해당 결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제94조(항소 절차)** ① 항소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국제경기연맹, 관련 경기단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각각 국가 항소기구의 청문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항소권이 있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적시에 항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명기된 피항소인은 누구든 반소와 그 밖에 추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권이 있는 당사자는 늦어도 자신의 답변 시점까지는 반소 또는 추가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sup>77</sup>

③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의 심리는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전의 결정 또는 검토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소의 당사자는 이전 심리에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전 심리에서 제기되었거나 다루었던 동일한 원인, 사실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sup>78</sup>

④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 이전 결정을 내린 징계기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sup>79</sup>

<sup>77</sup> [제94조 제2항 주해] 이 조항은 2011년 이후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정에서 선수의 항소기간 만료 후 도핑방지기구가 항소하는 경우에 선수에게 반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하게 되었다. 본 조항은 모든 당사자에게 완전한 청문 절차를 보장한다.

<sup>78</sup> [제94조 제3항 주해] 예를 들어, 1차 청문에서는 선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동일한 행위가 공모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항소권자는 항소에서 해당 선수에 대하여 부정행위와 공모 혐의 모두 제기할 수 있다.

<sup>79</sup> [제94조 제4항 주해] 국가항소기구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절차는 이전 절차의 결정 또는 제출증거에 구속받지 않는다.

⑤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는 모든 당사자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항소권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시에 항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국가항소기구 결정의 통지)** ① 국가항소기구는 항소 청문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관리 국제표준」 제9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결정의 이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제76조에 따른 경기결과의 실효, 제재조치의 부과 사유 등이 포함된 결정문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경기단체와 제88조에 따른 항소의 권리가 있는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본항에 따른 통지는 영문 요약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9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항소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 결정은 제102조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④ 국가항소기구의 최종결정과 결과조치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이외의 법원, 중재기구,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

**제96조(항소 전 결정의 효력)** 이 규정 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이 규정, 세계도핑방지규약 또는 관련 국제표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항소 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항소기구에서 달리 명하지 않는 한 항소 중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97조(국가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볼복)** 제95조의 국가항소기구 결정에 대해서는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관련 국제경기연맹만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해 항소된 결정을 내린 도핑방지기구로부터 관련 정보 일체를 입수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도핑방지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8조(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 ① 도핑방지위원회의 결과관리 절차 중



당사자 누구도 최종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가항소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sup>80</sup>

②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정한 합리적 기한 내에 도핑방지규정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와 같이 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했고 세계도핑방지기구의 항소가 합리적 조치였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결정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지출한 항소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제반 비용을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배상하여야 한다.<sup>81</sup>

## 제12장 기밀유지 및 보고

**제99조(통지의 방법)** ① 이 규정에 따른 통지는 본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 또는 검사대상후보명부의 포함에 관한 통지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소속 경기단체를 경유하여 선수에게 전달하고,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에 ‘수령확인증(Acknowledge Form)’을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검사대상명부 또는 검사대상후보명부에 관한 기타 통지는 전자우편 등 이용 가능한 통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에 관한 통지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에게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전

<sup>80</sup> [제98조 제1항 주해] 도핑방지위원회 절차의 최종 단계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고(예: 제재위원회의 결정), 당사자 누구도 해당 결정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절차의 다음 단계로 항소하지 않은 경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내부절차상 남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할 수 있다.

<sup>81</sup> [제98조 제2항 주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관리 및 청문 절차의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바로 항소하여 개입하기 이전에 도핑방지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기 전에 도핑방지위원회와 협의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거부 또는 불승인 결정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④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또는 그 밖에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지한다.

1.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관한 통지는 전자우편, 등기우편, 경기단체 경유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 후, 발송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이 경과한 때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해당 국가도핑방지기구,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대한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관한 통지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전까지 결과관리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든 사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수와 기타 관계자에게는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88조에 따라 항소권이 있는 도핑방지기구에는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국가도핑방지기구, 국제경기연맹,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제7장, 제8장 또는 제11장에 따라 수행된 검토 또는 진행 상황, 결과 등을 각 장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로 진행되지 않은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0조(비밀준수 의무)** ① 제99조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단체 또는 관계자는 제102조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가 일반에 공개할 때까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단체종목에서 소속 팀 등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비정형분석결과 및 그 밖에 도핑방지 규정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가 제102조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임직원, 계약자, 대리인, 자문위원 등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기밀정보의 보호 의무 및 기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또는 무단 공개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1조(도핑방지규정위반,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결정 위반에 관한 통지와 자료 요청)** ① 제47조, 제61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81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위반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그 결정에 이른 구체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정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영문 요약본을 세계도핑방지기구 및 항소권이 있는 도핑방지 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항소권이 있는 도핑방지기구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핑방지위원회에 해당 결정과 관련된 사건 서류의 사본 일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2조(일반공개)**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성명, 종목, 위반한 도핑방지규정, 관련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부과된 결과조치를 비롯한 사건의 처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sup>82</sup>

1. 제87조 또는 제88조에 따른 항소기구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
2. 제1호의 항소가 포기된 경우
3. 제8장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청문이 포기된 경우
4.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해 답변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제73조에 따라 결과관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sup>82</sup>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 주해] 본조에 따른 공개로 인하여 다른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일반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제4.1조에 명시된 세계도핑방지규약 비준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 제81조에 따라 새로운 자격정지기간이나 견책이 부과된 경우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서 열거한 정보를 포함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항소 결과를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핑방지위원회는 최종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제99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련 도핑방지기구에 통지한 이후,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신원, 관련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과 위반의 내용,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임시자격정지의 부과 여부에 대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87조 또는 제88조에 따른 항소기구의 결정에서 최종적으로 도핑방지 규정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우

2. 제1호의 항소가 포기된 경우

3. 제8장에 따라 제재위원회의 청문이 시행되었거나 청문이 포기된 경우

4.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에 대하여 답변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5. 제73조에 따라 결과관리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⑤ 제재위원회 또는 국가항소기구의 결정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결정 자체 및 그 결정의 배경이 되는 사실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도핑방지위원회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받는 경우 결정 내용의 전문을 공개하거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집한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일반공개는 제1항에 따른 필수 공개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의 누리집에 게시 후 1개월 또는 부과된 자격정지기간 중 긴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게시 의무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위반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남겨둔다.

⑦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도핑방지기구, 경기단체,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선수, 기타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개 진술에 대한 대응 및 제1항과 제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상식과 과학적 지식에 상충하는 특정 사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야 한다.

⑧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 보호대상자, 레크리에이션 선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법상의 규정 등을 고려하고 해당 사건의 경중에 비례하여 비공개하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3조(통계 보고)** 도핑방지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도핑관리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그 자료 사본 1부를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도핑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준수 모니터링)**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약준수 모니터링 임무 수행과 도핑방지기구 간 효과적인 자원의 이용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관련 국제표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도핑관리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수준 선수와 국가수준 선수의 선수생체수첩 데이터
2.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에 대한 소재지정보
3. 치료목적사용면책에 관한 결정
4. 결과관리 결정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배분계획의 조율, 도핑방지기구 간 중복검사 지원, 선수생체수첩 프로파일의 최신 상태 유지를 위하여, 「검사 및 조사 국

제표준」에 따라 모든 검사의 도핑검사서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감독과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신청, 결정 및 관련 자료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과관리에 대한 감독과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통지 및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결정
2. 비정상분석결과 이외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한 통지 및 관련 결정
3. 소재지정보 불이행
4. 임시자격정지의 부과, 취소 또는 복권에 관한 결정

⑤ 본조에서 명시된 정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선수, 선수의 국가도핑방지기구 및 국제경기연맹, 그 외 해당 선수에 대하여 검사 권한을 가진 도핑방지기구에서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05조(개인정보보호)**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을 포함한 국제표준, 이 규정 및 관련 법에 따라 적정 범위 내에서 선수와 기타 관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및 공개할 수 있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도핑방지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참가자 또는 관계자에게 이 규정의 이행을 목적



으로 개인정보가 도핑방지위원회 및 기타 관계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관련 법과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에 따라 통지한다.

3. 도핑방지위원회는 참가자 또는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리인이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제3자로 하여금 관련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장 결정의 이행

**제106조(가맹 도핑방지기구 결정의 효력 및 범위)** ① 도핑방지기구, 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가 내린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은 절차 당사자에게 통지된 후, 도핑방지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기구와 경기종목에서 자동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청문의 개최 후 또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하거나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임시청문이나 신속한 청문, 제53조 제5항에 따른 신속 항소의 권리를 포기한 후 확정된 임시자격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해당 임시자격정지기간 동안 가맹기구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 또는 활동에서 제79조에 따라 참가가 금지된다.
2. 자격정지의 부과 결정이 있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해당 자격정지기간 동안 가맹기구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 또는 활동에서 제79조에 따라 참가가 금지된다.
3.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수용 결정은 모든 가맹기구에서 자동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4. 제76조에 따른 특정 기간 내의 경기결과 실효에 관한 결정은 모든 가맹기구의 관할 내에서 해당 기간의 경기결과에도 효력을 미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과 효력을 인정하고,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위 결정의 효력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제로 결정을 통지받은 날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날 중에서 앞선 날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 ④ 도핑방지기구, 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결과조치를 유예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제로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과 해당 결정이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날짜 중에서 앞선 날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도핑방지위원회와 경기단체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경기대회 중에 임시 절차에 따라 내린 도핑방지규정위반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와 경기단체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다만,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규정에서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정식 절차에 따라 항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83</sup>

**제107조(도핑방지기구에서 내린 기타 결정의 이행)** 도핑방지위원회 및 경기단체는 제106조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sup>84</sup>

**제108조(비가맹기구 결정의 이행)** 도핑방지위원회와 경기단체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비가맹기구가 자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세계도핑

<sup>83</sup> [제106조 제5항 주해] 예를 들어,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의 규정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신속한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또는 일반적 스포츠중재재판소 절차에 따른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신속한 항소를 선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가맹기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sup>84</sup> [제106조 및 제107조 주해] 제106조에 따른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은 다른 가맹기구의 결정 또는 추가 조치 없이 다른 가맹기구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선수에게 임시자격정지를 부과하면, 그 결정은 국제경기연맹 수준에서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당 '결정'은 국가도핑방지기구가 내린 결정이며, 국제경기연맹에서 할 별도의 결정은 없다. 따라서, 선수가 임시자격정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할 때는 해당 국가도핑방지기구를 상대로만 할 수 있다. 제107조에 따른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따른 이행은 각 가맹기구의 재량에 따른다. 제107조의 결정은 임시청문이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의한 수용 이전에 부과된 임시자격정지 등 제106조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도핑방지기구의 결정을 말한다.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결정을 가맹기구가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결정에 대한 항소와 별도로 항소할 수 없다. 다른 도핑방지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한 인정 범위는 제4장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방지규약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sup>85</sup>

## 제14장 교육

**제109조(교육의 시행)**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18.2조

및 「교육 국제표준」의 요건에 따라 도핑방지 교육을 계획, 이행 및 평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정부 및 교육기관은 도핑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금지목록 상의 약물 및 방법
2.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그에 따른 결과조치
3. 도핑의 사회적 영향과 건강상 부작용
4. 시료채취 절차
5. 선수의 권리와 의무
6.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7. 치료목적사용면책
8. 보충제의 위험관리
9. 도핑이 스포츠정신에 미치는 해로움

<sup>85</sup> [제108조 주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지 않은 기구의 결정이 일부 측면에서만 세계도핑방지규약과 일치하는 경우, 가맹기구는 해당 결정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원칙과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가맹기구가 선수의 체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의 존재를 근거로 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적발하는 과정은 세계도핑방지규약과 일치하지만 적용된 자격정지기간이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짧다면, 가맹기구는 도핑방지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수의 국가도핑방지기구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제8조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된 긴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에 따른 가맹기구의 결정 이행 또는 미이행은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 될 수 있다.

## 10. 소재지정보 요건

## 11. 도핑의 의심 제보

-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도자, 의료인, 스포츠행정가 등 선수지원요원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장 보칙

**제110조(시효)**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제7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의 통지가 있었거나 그러한 통지가 합당하게 시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규정의 개폐)** ① 한국도핑방지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③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2조(해석)** ①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은 한국도핑방지규정의 필수 부분이며, 상충이 있을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이 우선한다.

② 이 규정은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이 규정의 주제는 이 규정의 해석에 사용된다.

③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이 규정은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가맹기구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이 규정 조문의 제목은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며, 규정의 일부분이거나 그 자체로 해당 조항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및 이 규정에 사용된 ‘일’의 용어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달력의 일자를 의미한다. 이 규정에서의 일자는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연속하여 산정하며, 마감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⑥ 세계도핑방지 프로그램의 목적, 범위와 구성 및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그 부록1은 세계도핑방지규약의 필수 부분으로 간주된다.

**제113조(일부무효)** ①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탈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이와 관련된 발견, 결정 또는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발견, 결과 또는 결정 등을 무효로 할 수 없다.

② 이 규정의 특정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 시행 불가능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밖의 규정은 유효하다.

③ 이 규정을 시행할 때, 개인에게 임무 수행을 위한 임명, 자격, 권한이 정당하게 부여되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후 그 개인의 임명, 자격 또는 권한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그 개인의 행위는 유효하다.

**제114조(적용법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에 따른다.

## 부칙(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월 1일(이하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핑방지규정위반 사건은 위반행위 당시에 유효한 도핑방

지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효력발생일 전에 발생한 위반이더라도 제9장에 따른 재위반 횟수 산정 시에는 포함된다.
2. 효력발생일 당시 혐의 통지가 있었으나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과 효력발생일 이전에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가 존재했으나 효력발생일 이후에 혐의가 제기되는 도핑방지규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의 정황상 ‘경한법(Lex Mitior)’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 당시에 유효한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75조 제5항 및 제110조는 실체 규정이 아닌 절차 규정으로 이 규정의 다른 절차 규정과 함께 소급하여 적용된다. 다만, 제110조는 효력발생일까지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소급하여 적용된다.
3.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제13조 제4호의 소재지정보 불이행(「결과관리 국제표준」에 정의된 제출 불이행, 검사 불이행 모두 포함)은 「결과관리 국제표준」에 따라 이월되고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불이행 발생 후 12개월이 지나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4. 효력발생일 이전에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확정된 최종결정이 있었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효력발생일 당시 여전히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나 해당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관리에 책임이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이 규정에 따른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한 결정은 제90조에 따른 항소의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확정된 최종결정이 내려지고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



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가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평가되었을 자격정지기간을 적용한다.<sup>86</sup>

6. 금지목록에 등재된 약물 및 방법과 관련된 금지목록과 기술문서의 변경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목록에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제외될 경우, 그 제외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일 현재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해당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관리에 책임이 있는 다른 도핑방지기구에 해당 약물 또는 방법이 금지목록에서 제외된 사실을 감안하여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을 고려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2022.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sup>86</sup> [부칙 제2조 제5호 주해] 부칙 제2조 제5호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효력발생일 이전에 내려지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규정으로 종전의 위반을 규율할 수 없다.

## 별표 1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기구(Signatories)**”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 기구를 말한다.
2. “**가중처벌 상황(Aggravating Circumstances)**”이란 기본 제재보다 긴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해야 마땅한 정황이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행위를 말한다. 복수의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했거나 보유한 경우,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여러 차례 사용 또는 보유했거나 다수의 다른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 이상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경기력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적발 또는 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만 또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결과관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정황과 행위는 예시적 사례이며, 그 외 유사한 정황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기간을 연장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개인종목(Individual Sport)**”이란 단체종목이 아닌 종목을 말한다.
4. “**검사(Testing)**”란 검사배분계획의 수립, 시료채취, 시료 관리, 분석 기관으로의 시료 운반을 포함하는 도핑관리 절차의 일부를 말한다.
5. “**검사대상명부(Registered Testing Pool)**”란 국제경기연맹이 정한 국제수준과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국가수준의 최상위 선수가 등록된 명부를 말한다. 명부에 속한 선수들은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계도핑방지규약 제5.5조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른 소재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 관련 사항은 제32조에 따른다.
6. “**검사대상후보명부(Testing Pool)**”이란 도핑방지위원회가 관리하는



선수명부를 말하며, 검사대상후보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보다는 완화된 소재지정보 제출 기준이 적용된다. 검사대상후보명부 관련 사항은 제33조에 따른다.

7. “**결과관리(Results Management)**”란 「결과관리 국제표준」 제5조에 따른 통지 이전 단계부터 협의 통지,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8. “**결정기준의 한계수치(Decision Limit)**”란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정상분석결과로 보고되어야 하는 시료의 한계치가 설정된 약물에 대한 결과값을 말한다.
9. “**경기(Competition)**”란 단일 경주, 시합, 게임 또는 선발대회를 말한다. 농구 게임, 올림픽 100미터 경주 본선 등이 그 예다. 일일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시상하는 단계별 경주와 그 밖에 단일종목대회의 경우 경기와 대회의 구분은 관련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경기기간 외(Out-of-Competition)**”란 경기기간 중이 아닌 기간을 말한다.
11. “**경기기간 중(In-Competition)**”이란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의 전일 오후 11:59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경기연맹이 소관 종목에서 달리 정의되어야 할 합리적 사유를 제시할 경우 해당 종목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승인하면, 모든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종목에서 대체 정의를 따라야 한다.<sup>87</sup>

<sup>87</sup> [경기기간 중 주해] ‘경기기간 중’에 대한 보편적 정의에 따라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 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기기간 중 검사 일정에 대한 선수들 간의 혼선을 없애거나 감소시킨다. 또한, 경기대회 기간 중 각각의 경기 사이에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분석결과를 방지하고,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로 인한 경기기간 동안의 잠재적인 경기력 향상의 효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12. “경기단체(National Sports Federation)”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해당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이 있는 국내 유일한 단체로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3. “경기대회(Event)”란 하나의 단체에서 주관하여 일련의 개별 경기가 함께 진행되는 대회를 말한다. 올림픽대회, 국제경기연맹의 세계선수권대회, 팬 아메리칸 경기대회 등이 있다.
14. “경기대회기간(Event Period)”이란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정한 개막부터 폐막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5. “경기장(Event Venues)”이란 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주관단체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6. “과실(Fault)”이란 의무의 위반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결여된 것을 말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경험, 보호대상자 여부 또는 장애와 같은 특별한 고려 사항, 선수가 인식하였어야 하는 위험의 정도와 실제로 행한 주의 및 조사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기대된 행위 기준에서 벗어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거나 선수의 경력 또는 경기 시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제69조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고려되지 아니한다.<sup>88</sup>
17.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No Fault or Negligence)”이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나 투여 또는 다른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최대한의

<sup>88</sup> [과실 주해] 선수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실이 고려되는 모든 조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과실의 정도를 평가할 때에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를 감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도저히 알 수 없었거나 의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자 및 레크리에이션 선수를 제외하고, 제13조 제1호 위반의 경우 선수는 금지약물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18. “**관계자(Person)**”란 자연인이나 조직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9. “**교육(Education)**”이란 스포츠 정신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가치를 함양하고, 행동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20. “**국가도핑방지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란 각 국가의 국가 수준에서 도핑방지규정을 제·개정하고 시행하며, 시료채취를 주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결과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기구를 말한다. 정부 당국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가 국가도핑방지기구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도핑방지기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지칭한다.
21. “**국가수준 선수(National-Level Athlete)**”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각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국가수준으로 규정한 선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수준의 선수는 제5조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22.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경기단체가 도핑방지 분야에서 전형적인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경기단체도 국가올림픽위원회로 본다.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를 지칭한다.
23. “**국내경기대회(National Event)**”란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대회 또는 경기로, 국제경기대회가 아닌 경기대회 또는 경기를 말한다.

24.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Event)”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그 밖에 국제 스포츠기구가 주관단체이거나 기술 임원을 지명하는 경기대회 또는 경기를 말한다.
25. “국제수준 선수(International-Level Athlete)”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각 국제경기연맹이 정한 국제 수준에서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를 말한다.<sup>89</sup>
26.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란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도핑방지지구가 채택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은 다른 대체 기준이나 관행 또는 절차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국제표준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결론 내리기에 충분하다. 국제표준에 따라 발간된 기술문서도 국제표준에 포함된다.
27. “권리유보합의(Without Prejudice Agreement)”란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의 목적상 도핑방지기구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간에 실질적 도움에 관한 합의 또는 결과관리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도핑방지기구에 제공한 정보를 도핑방지기구가 결과관리 절차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역시 도핑방지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결과관리 절차에서 도핑방지기구를 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특정 기간을 정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와 도핑방지기구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면 합의를

<sup>89</sup> [국제수준 선수 주해] 국제경기연맹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선수를 국제수준 선수로 분류하는 기준, 예를 들어 순위, 특정 국제경기대회 참가, 참가 자격 부여 등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경기연맹은 해당 기준을 명확하고 간략한 형태로 공개하여 선수가 국제수준 선수로 분류될 것임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여부가 기준이라면 해당 국제경기대회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말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도핑방지기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합의 내용으로 정한 특정 기간 이외에 다른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나 증거는 사용할 수 있다.

28. “근무일(Working Day)”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9. “금지목록(Prohibited List)”이란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명시한 목록을 말한다.
30. “금지방법(Prohibited Method)”이란 금지목록에 명시된 방법을 말한다.
31.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이란 금지목록에 명시된 성분 또는 성분군을 말한다.
32.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란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수시로 채택하고 발행하는 문서로서 국제표준에 명시된 특정한 도핑방지 주제에 관한 필수 기술요건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33. “남용약물(Substance of Abuse)”이란 제19조 제4항에서 정의한 금지약물을 말한다.
34. “단체종목(Team Sport)”이란 경기 중에 선수 교체가 허용되는 종목을 말한다.
35. “대사물질(Metabolite)”이란 생체 내 변환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36. “도핑관리(Doping Control)”란 검사배분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최종 항소 및 결과조치의 이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말한다. 검사, 조사, 소재지정보,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시료채취 및 취급, 분석기관에 의한 분석, 결과관리, 제79조부터 제82조의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 위반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절차를 포함하여 그 사이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포함한다.

37. “도핑방지규정위반의 결과조치(Consequences of Anti-Doping Rule Violations: Consequences)”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가) 실효(Disqualification) - 특정 경기나 대회에서 선수가 획득한 경기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그 결과로 받은 메달, 점수, 상금 등을 박탈하는 조치, (나) 자격정지(Ineligibility) -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경기나 활동의 참가를 금지하거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조치, (다) 임시자격정지(Provisional Suspension) -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최종결정에 앞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 또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 (라) 재정적 결과조치(Financial Consequences) -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는 조치, (마) 일반공개(Public Disclose) - 제12장에 따라 조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 또는 일반 대중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사실 및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조치. 단체종목의 경우, 해당 팀에 대해서도 제84조에 따라 결과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8. “도핑방지기구(Anti-Doping Organization)”란 도핑관리 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절차의 개시,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한 규정의 채택에 책임이 있는 세계도핑방지기구 또는 가맹기구를 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소관 대회의 검사를 주관하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도핑방지기구를 포함한다.
39.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DAMS)”이란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에 입각하여 이해관계자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하여 설계된 데이터의 입력, 저장, 공유 및 보고를 위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0. “**도핑방지활동(Anti-Doping Activities)**”이란 도핑방지 교육과 정보, 검사배분계획, 검사대상명부 운영, 선수생체수첩 관리, 검사 실시, 시료 분석 준비, 정보수집, 조사 실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절차, 결과관리, 부과된 결과조치의 준수와 세계도핑방지규약, 이 규정 및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기구가 직접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타 모든 도핑방지 관련 활동을 말한다.
41. “**독립관찰프로그램(Independent Observer Program)**”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감독에 따라 특정한 경기대회 전 또는 대회 기간에 도핑관리 과정을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찰 결과를 보고하는 관찰단 또는 감시단을 말한다.
42. “**레크리에이션 선수(Recreational Athlete)**”란 국내에서는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6)에서 정의한 선수를 말한다.
43. “**미성년자(Minor)**”란 만 18세 미만의 자연인을 말한다.
44. “**보유(Possession)**”란 실제 물리적으로 보유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sup>90</sup>를 말한다. 다만,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 또는 그 장소에 대하여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보유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도핑방지기구에 명확하게 밝혀 보유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유 사실만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정의에 상반되더라도, 전자거래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포함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

<sup>90</sup> [보유 주해] 보유는 개인이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이 존재하는 장소에 대하여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통제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의 구매 시에는 구매자의 보유가 성립한다.<sup>91</sup>

45.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란 도핑방지규정위반 시점에 만 16세 미만인 자, 만 18세 미만이고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령 제한이 없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이력이 없는 자, 연령 외 이유로 관련 국내법에서 법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sup>92</sup>
46. “부정거래(Trafficking)”란 도핑방지기구의 권한 하에 있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3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거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중여, 수송, 발송, 운반, 전달 또는 분배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인 치료 목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정할 만한 사유로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여한 선의의 의료종사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반 정황상 금지약물이 합법적인 치료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경기력 향상 의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과 관련된 행위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부정행위(Tampering)”란 금지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핑관리 과정에서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시료채취를 방해하는 행위, 시료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도핑방지기구 또는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청문기구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변조하

<sup>91</sup> [보유 주해] 본 정의에 따르면 선수의 차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발견되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차를 사용했음을 선수가 증명하지 않는 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차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선수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 안의 의약품 상자에서 발견된 경우,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약품 상자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금지약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제3자의 주소로 발송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유에 해당한다.

<sup>92</sup> [보호대상자 주해] 세계도핑방지규약은 특정 연령 또는 지적능력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 보호대상자를 다른 선수 또는 관계자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로 법적 행위능력이 없는 패럴림픽 선수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는 대회’는 주니어 또는 연령에 따른 참가 제한이 있는 대회를 제외한 경기대회를 의미한다.



는 행위,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하는 행위, 도핑방지기구 또는 청문기구를 기망하여 결과관리 또는 결과조치의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외에 도핑관리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93</sup>

48.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란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나 금지방법의 사용 증거를 입증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 기관 또는 승인 분석기관의 보고를 말한다.
49.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란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비정상수첩결과로 확인된 보고를 말한다.
50. “**비정형분석결과(Atypical Finding)**”란 비정상분석결과 결정에 앞서 「분석기관 국제표준」 또는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 또는 승인 분석기관의 보고를 말한다.
51. “**비정형수첩결과(Atypical Passport Finding)**”란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비정형수첩결과로 확인된 보고를 말한다.
52. “**사용(Use)**”이란 방법을 불문하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바르거나, 섭취, 주입 또는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53. “**산하단체(Affiliate Organization)**”란 경기단체의 시·도 종목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를 말한다.
54. “**선수(Athlete)**”란 국제경기연맹의 정의에 따른 국제수준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정의에 따른 국가수준에서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도핑방지기구는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 선수가 아닌 선수에 대하여

<sup>93</sup> [부정행위 주체] 예를 들어, 검사 중 도핑검사서의 식별번호 변조, B 시료 분석 시 B 시료병의 파피, 이물질 첨가에 의한 시료 변조, 잠재적 증인 또는 도핑관리 과정에서 증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증인에 대한 위협 또는 위협 시도는 금지된다. 결과관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75조 제3항 참조. 다만,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에 대한 적법한 방어권의 일환으로 취하는 조치는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도핑관리와 관련된 도핑검사관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는 체육단체의 징계 규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여 도핑방지규정을 적용하고 이들을 “선수”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제한된 검사를 하거나 검사 일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금지약물 전체가 아닌 일부 성분에 대해서만 시료를 분석할 수도 있으며, 소재지정보를 요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전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도핑방지기구가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이 아닌 선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선수가 제13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선수에게 규정에 따른 결과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제8호와 제9호 및 도핑방지 정보와 교육 측면에서 가맹기구, 정부, 그 외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한 체육단체의 권한 하에서 스포츠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선수로 본다.<sup>94</sup>

55.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이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과 「분석기관 국제표준」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를 수집, 대조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을 말한다.
56.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이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선수와 함께 일하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지도자,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 요원, 부모,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57. “세계도핑방지규약(Code)”이란 World Anti-Doping Code, The Code를 지칭한다.
58. “세계도핑방지기구”란 World Anti-Doping Agency, WADA를 지칭한다.
59. “스포츠중재재판소”란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를 지칭한다.

<sup>94</sup> [선수 주체]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는 ① 국제수준 선수 ② 국가수준 선수 ③ 국제수준 선수 및 국가수준 선수는 아니지만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개인 ④ 레크리에이션 선수 ⑤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개인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 국제수준 선수와 국가수준 선수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 및 국가수준의 종목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국제경기연맹과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서 정한다.



칭한다.

60. “**시도(A Attempt)**”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이르는 계획된 행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도에 연루되지 않은 제3자에게 발각되기 전에 해당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시도만을 근거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61. “**시료 또는 표본(Sample or Specimen)**”이란 도핑관리의 목적으로 채취한 생체 물질을 말한다.<sup>95</sup>
62. “**실질적 도움(Substantial Assistance)**”이란 제70조와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명시된 절차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서명이 포함된 진술서 또는 인터뷰 기록의 방법으로 완전히 공개하여야 하고, 도핑방지기구 또는 청문기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청문에서 증언하는 등 해당 정보와 관련한 사안의 조사 및 결정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건이나 절차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의 개시에 충분한 근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63.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이란 도핑방지기구가 제1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의 인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한 원칙을 말한다.
64.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제3자(Delegated Third Party)**”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도핑관리 또는 도핑방지 교육프로그램의 제반 활동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서, 도핑방지위원회를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그 밖의 도핑관리 업무 또는 도핑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

<sup>95</sup> [시료 또는 표본 주해] 혈액 시료의 채취가 특정 종교 또는 문화의 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제3자, 기타 도핑방지기구 또는 도핑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시료채취요원 등을 말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가항소기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5. “**오염된 제품(Contaminated Product)**”이란 제품의 라벨 또는 합리적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공개되지 않은 금지약물이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66. “**운영상 독립(Operational Independence)**”이란 결과관리의 책임이 있는 도핑방지기구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위원, 자문위원과 사건의 조사 또는 사전심사에 관여한 자는 해당 결과관리의 청문 위원 또는 간사가 될 수 없고, 청문 위원은 도핑방지기구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청문 및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문 위원 또는 청문 결정에 관여된 자가 사건의 조사 또는 진행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7.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UNESCO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s)**”이란 2005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스포츠도핑방지협약을 말하며, 협약 당사국 회의와 국제스포츠도핑방지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68. “**임시청문(Provisional Hearing)**”이란 제52조 제3항 및 제53조 제5항과 관련하여, 제8장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청문 전에 개최하는 약식 청문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sup>96</sup>
69. “**조직적 독립(Institutional Independence)**”이란 항소기구는 결과관리를 담당하는 도핑방지기구와 조직상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과관리를 담당하는 도핑방지기구로부터 어떤 식으

<sup>96</sup> [임시청문 주해] 임시청문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전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비절차이다. 선수는 임시청문 후 사건에 본안에 관한 정식 청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 제52조 제3항의 ‘신속한 청문’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정식 청문을 의미한다.



로든 관리·감독을 받거나 연관 또는 종속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70.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Major Event Organizations)**”란 대륙별, 지역별 또는 기타 국제경기대회의 주관단체 역할을 하는 국가 올림픽위원회 및 그 외 국제종합스포츠기구의 대륙 간 연합체를 말한다.
71.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이란 사건의 전반적 상황과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위반과 관련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중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자 및 레크리에이션 선수를 제외하고, 제13조 제1호 위반의 경우 선수는 금지약물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72. “**참가자(Participant)**”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을 말한다.
73. “**청문(Hearing)**”이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규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하여 임시청문, 재재위원회, 항소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74. “**체육단체(Sports Organization)**”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5. “**최소보고수준(Minimum Reporting Level)**”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증 분석기관이 비정상분석결과로 보고하지 않아야 하는 시료 내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추정 농도를 말한다.
76.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이란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있고,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77. “**투여(Administration)**”란 타인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 공급, 감독, 조력 또는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합법적인 치료 목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정할 만한 사유로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관여한 선의의 의료종사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반 정황상 금지약물이 합법적인 치료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경기력 향상 의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과 관련된 행위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8. “**특정방법(Specified Method)**”이란 제19조 제3항에 정의된 특정 방법을 말한다.
79. “**특정약물(Specified Substance)**”이란 제19조 제3항에 정의된 특정 약물을 말한다.
80. “**표적검사(Target Testing)**”란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선수를 검사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81. “**표지자(Marker)**”란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사실을 나타내는 화합물, 화합물군 또는 생체요소를 말한다.



## 별표 2

## 주요 약어 목록

약어	원어	약어
AAF	Adverse Analytical Finding	비정상분석결과
ABP	Athlete Biological Passport	선수생체수첩
ADAMS	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ADO	Anti-Doing Organization	도핑방지기구
AF	Atypical Finding	비정형분석결과
APFs	Adverse Passport Finding	비정상수첩결과
ATPF	Atypical Passport Finding	비정형수첩결과
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	스포츠중재재판소
EPO	Erythropoietin	에리스로포이에틴 (근육 호흡 용적 및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성분)
IC	In-Competition	경기기간 중
IF	International Federation	국제경기연맹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S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
KADA	Korea Anti-Doping Agency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R	Korea Anti-Doping Rules	한국도핑방지규정
KSOC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대한체육회
KPC	Korea Paralympic Committee	대한장애인체육회
MEO	Major Event Organization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NADO	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국가도핑방지기구
NF	National Sports Federation	경기단체
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가올림픽위원회
NPC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국가패럴림픽위원회
OOC	Out-of-Competition	경기기간 외
RM	Results Management	결과관리
RTP	Registered Testing Pool	검사대상명부
TP	Testing Pool	검사대상후보명부
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치료목적사용면책
WADA	World Anti-Doping Agency	세계도핑방지기구
WADC	World Anti-Doping Code	세계도핑방지규약

